

첫 마음

“내기할까? 세상이 날 바꾸는지, 내가 세상을 바꾸는지?”

‘어른문제 대책본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모습을 드러냈던 한 청소년사이버공동체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청소년들이 서서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당당하게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임에 틀림없나 봅니다. 한 청소년은 “청소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청소년의 반대말은 ‘자유’이다”라고 답했지요. 1989년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며 국민교육헌장을 빗댄 고교교육헌장을 발표하여 입시위주 교육 현실에 쓴웃음을 내뿜던 청소년들이 1998년에는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풍성한 논의와 관심들이 제기되었던 1998년에는 청소년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통해 청소년이 내일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임을 천명하면서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청소년 관계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를 주제로 회의를 하며, 사회발전의 희망과 에너지이자 열정과 실험정신인 청소년을 건강한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199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10주년 되는 해이자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고 주장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여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2000년에는 청소년들이 ‘두발제한 반대 운동’으로 이 사회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계속되던 인권법 논의는 드디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동안 권리를 유보하고 참을 것만 배워온 청소년들은 막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서툴러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거나 스스로도 자신감과 의욕 상실, 패배감과 낙담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장유유서의 유교적 문화 속에서 아직도 청소년은 어른들이 보호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입시준비라는 원죄(?)에 묶여 현재의 삶을 누릴 권리는 잠시 접어 두어야 합니다. 권리 의식을 신장하고 권리 향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리 행사 경험과 기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갖추기까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 청소년들이 시작한 첫걸음이 싹싹한 달음질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자치활동과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주체적

으로 실천해 보는 경험,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불모의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힘겨운 첫발을 내딛으면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에게 조금만 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스스로 의젓하고 당당하게 일을 펼치고 결정하며 책임져 나가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치활동 능력을 기르고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담았습니다. I 권에는 다양한 자치활동을 해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치조직이 왜 필요하며 의미를 갖는가(1장. 김영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2장. 김민), 자치활동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3장. 이용교), 그리고 자치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 기술(4장. 안재희) 등이 그것입니다. II 권은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치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활동 아이디어들을 담았습니다. 쉽게 풀어쓴 자치조직 구성·운영방법(1장. 김순이·변길섭), 자치활동으로 해볼만한 문화축제 프로그램(2장. 심한기, 3장. 김태황), 대학자원을 활용한 자치활동(4장. 김병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치활동과 청소년 사회참여활동(5장, 6장. 안승문) 등이 그것이지요. 청소년분야의 자원들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특히, 2권은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활동하고 있는 '팬클럽 어른들'이 생생한 현장정보와 '활동 비법들'을 소개하고 있어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지만 청소년 자치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처음 자치조직을 꾸리거나 신입회원을 맞을 때 오리엔테이션이나 세미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보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현재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며 무릎을 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다 더 인간답게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제 청소년이 나서야 합니다. 청소년은 순수한 열정과 창의성, 때묻지 않은 비판의식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에 이러한 '청소년의 힘'이 필요합니다. 머지 않아 어른들이 청소년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외국의 한 청소년단체의 모토처럼 "We can't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you." (우리는 당신 없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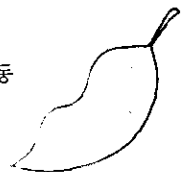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참 아름다운 도전! 바로 청소년 자치활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펼치는 활동들을 즐겁고 지혜롭게 꾸려나가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이 책이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불의 앞에선 정의를 말할 수 있고...그러나 거친 벌판의 작은 들꽃에도 눈물짓는'

그런 청소년을 찾습니다.

2001년 겨울, 집필자 일동



차례

첫마음

청소년헌장

제1장 청소년자치활동의 의의

1. 사회변화와 청소년참여	6
2. 청소년참여의 의의	15
3. 청소년 권리의 이해	23
☞ 청소년 참여도를 평가해 봅시다	30

제2장 청소년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1. 청소년 자치활동과 학생자치활동	40
2. 청소년 자치조직의 구성과 활동단계	42
3. 자치조직의 운영	53
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55

제3장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과 활용

1. 지방자치단체	64
2. 지방의회	69
3.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	72
4.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74
5. 기타 지역사회 기관	77

제4장 자치활동능력과 사회기술

1. 회의 진행법	82
2. 문제해결 방법	85
3. 사회행동의 기술	89
4. 갈등해결 방법	98

부 록

청소년육성 분야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나요?	116
-------------------------------	-----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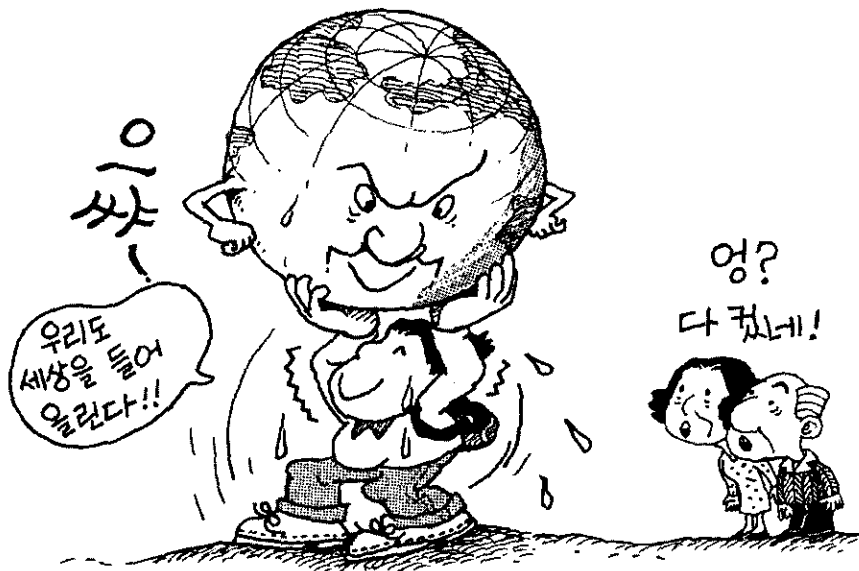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제1장 청소년 자치활동의 의의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헌장〉 전문 중에서

1. 사회변화와 청소년참여

1)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최근의 세계적 동향으로 주목할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이다. 이미 여러 국제회의에서 '청소년참여'가 주요 테마로 논의된 바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다.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주요 국제회의에 각국의 청소년대표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 선진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청소년육성의 주된 방향을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발"에 두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제 청소년은 어른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성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책임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노력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사회변화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기술혁명을 위한 핵심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국가적·세계적 수준의 정책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참여할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여는 그들에게 광범위한 발전자원과 기회에의 접근을 촉진시키는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에 의해 성취된 발전은 미래에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비행 예방과 불안정한 청소년들에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전체 삶의 수준과 복지에 의미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미래의 주역' 일 뿐만 아니라 현재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우리의 새로운 정책은 사회 모든 부문에의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이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새로운 정책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들이 모든 형태의 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받고 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왔습니다……

나는 이 회의에서 일치된 우리의 목소리가 세계 청소년과 대중들의 귀에 울려 퍼질 것이며, 리스본선언이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행동프로그램의 범세계적 실행을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모으고 함께 활동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계공동체의 노력에 성실한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1998. 8. 11. 세계청소년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국정부대표 연설문 중에서)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회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가 열렸다. 이는 세계 140여개 국의 청소년 관계장관이 모여 세계의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장으로서, 전세계의 현직 청소년 관계 정부관리가 한자리에 모인 획기적인 일로 기록되었다. 이 회의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안건의 하나가 바로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지닌 존재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관계장관들은 국가·지역·세계 수준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의 형성, 집행, 후속작업, 모니터링, 평가과정에 긴밀하게 결합하여 민주적 과정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회의결과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the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을 채택하여 각 정부는 청소년정책을 주요 국정으로 다룰 것을 다짐하고 '청소년참여, 개발, 평화, 교육, 고용, 건강, 약물남용' 등의 영역에서 세계적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한국정부 대표는 11일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처방과 선도·보호위주



있던 한국의 청소년정책이 이제, 청소년을 오늘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발전의 주동력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는 정책으로 변화했음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에게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요구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혔다.

이미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국제기구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식 단계에 있다. 유엔은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정하면서 '평화, 발전, 참여'를 주제로 채택하여 청소년에게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해 가고자 하는 희망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1998년 '세계청소년 관계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8년 '자율과 참여'를 주요 이념으로 하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청소년헌장' 개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1998년 10월 25일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청소년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5개년계획' 중 청소년 권익증진과 자율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들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자생·자율활동 지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청소년 봉사활동 생활화, 청소년의 권익과 시민권 신장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자치활동 경험 제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청소년단체·시설 등에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자율·자치조직들이 구성되어 그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청소년은 세계, 사회, 경제, 정치 개발의 최전선에 있다. 청소년은 지적인 공헌과 지지형성 능력 뿐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우리 사회의 진보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미래의 건설과 설계에 남여 청소년의 참여를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각 사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국제연합 청소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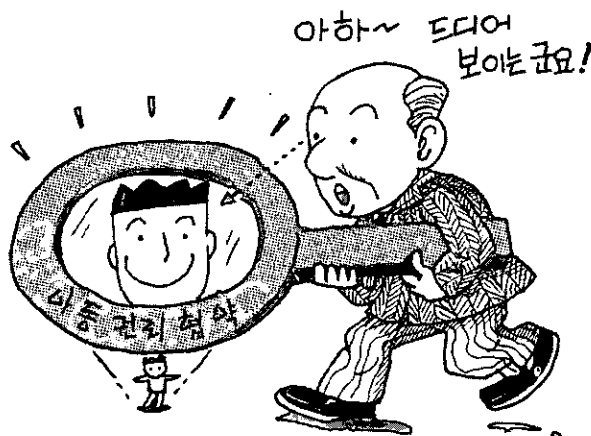
2) 국제문서를 통해본 청소년 참여권

사회는 청소년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바꾸어 그들을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극적 참여자이자 변화의 주체로 봐야한다. 청소년은 오늘날과 미래의 사회건설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채택, 1990 발효)

‘아동권리협약’은 역사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권리에 대한 조약이다. 이 협약의 초안작업은 ‘세계 아동의 해’인 1979년에 시작되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총회 결의안 44/25에 의해 채택되고 서명, 승인되었으며 제49조항에 의거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협약 체결 국가들은 행정, 입법, 사법 및 기타 절차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다. 이 협약은 총체적인 인권(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을 다루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협약은 그 내용 중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 전문에서는 아동이 사회 속의 한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것과 국제연합헌장에서 천명된 이상주의적 분위기 즉, 평화, 존엄성,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자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2조항은 협약 체결 국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 속에서 아동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제13조항은 아동은 표현의 자유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9조항은 교육이 아동의 부모,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나 가치관, 아동이 살고 있는 국가의 가치관, 아동의 출생지, 아동의 것과는 다른 문명 등과 상관없이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너, 그거아니?

한국정부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함). 아동권리협약이 기존 선언들의 한계를 극복한 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사국이 협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아동의 권리를 국내에서 그리고 국가간에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협약은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이를 감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며(제42조), 매 5년마다 국내의 아동권리 실태와 진전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제44조). 우리 나라는 1994년 11월 8일 1차 국가보고서를, 1999년 11월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청소년들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내에서 잘 이행되어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의견을 제시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



UN 아동권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 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2000년과 미래를 향한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1995)

‘2000년과 미래를 향한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은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상황개선을 위한 실행방침과 정책토대를 제공해 주기 위해 ‘세계 청소년의 해’ 제10회 기념일인 199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총회가 ‘세계 청소년의 해’를 위해 밝힌 ‘참여, 발전, 평화’라는 주제는 이 프로그램의 일반 주제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의 연령에 속한 집단으로 보는 국제연합의 정의에 따라 10억 3천만, 약 세계 인구의 18%가 되는 인구집단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로그램의 10가지 주요 우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 | | |
|------------------------------------|---------|--------------|
| 1. 교육 | 2. 고용 | 3. 기아와 빈곤 |
| 4. 건강 | 5. 환경 | 6. 약물남용 |
| 7. 청소년 일탈 | 8. 여가활동 | 9. 소녀와 젊은 여성 |
| 10. 의사결정과 사회생활에서 청소년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 | |

특히 열 번째 분야는 사회생활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폭넓고 효과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있는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하고 강화할 것
2. 청소년의 사회, 정치, 개발, 환경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사회기여를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할 것
3. 재정, 교육, 기술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단체와 그 활동을 장려할 것.
4. 청소년 단체들 간의 국가적 · 지역적 ·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장려할 것
5. 국제연합총회의 국가대표단에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국제 포럼 참여 기회를 강화할 것

진보를 향한 각 사회의 역량은 다른 모든 요소들 중 미래사회의 건설과 설계에 청소년들의 공헌과 책임을 얼마나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청소년들은 지적인 공헌과 지지형성 능력 뿐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효과적 사회참여에 필요한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2000년과 미래를 향한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 우선순위 10)

(3)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1998)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은 1998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포르투갈의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세계 청소년 포럼’에서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와 같은 참여를 촉진시키는 청소년 정책 권고사항의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한다. 청소년, 청소년 단체, 국제연합시스템, 정부간 기구 대표들은 인간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브라가실천계획’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모든 관계자들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수준의 접근에 의해서만 발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밝힌 청소년 참여의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개발과정에서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공동에 의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2. 개발과정에서 청소년의 이해관계가 인식되어야만 한다.
3. 남녀 청소년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젊은 여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5. 모든 청소년은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 없이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청소년은 미래의 자원에 관한 현재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7. 청소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 비정부기구, 학생회, 노동조합, 정당, 대중매체의 형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들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8. 청소년문제 및 사안은 모든 정책형성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의 참여가 전체 인류의 개발에 필요조건임을 확신하며 여기 이렇게 인간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모여있다.”

“새 천년의 문턱에 서서 청소년들은 꿈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단체, 정부, 국제연합시스템, 기타 정부간 기구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창조를 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4)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1998)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은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관계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세계장관회의는 1945년 국제연합이 창립된 이래 장관급 수준에서 청소년에 대해 열리는 국제회의로는 첫 번째였다. 이 회의는 ‘2000년과 미래를 향한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의 후속절차로 열린 것이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열린 기회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회의에 참가한 넘는 정부 지도자들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여덟 가지 분야, 즉 국가 청소년 정책, 청소년 참여, 개발, 평화, 교육, 고용, 보건, 약물남용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였다.

참여 분야에서 정부지도자들은 다음의 일곱 가지 주요한 활동사항에 동의하였다.

1. 국가·지역·국제적인 수준에서 청소년의 사회 전반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한다.
2. 청소년의 사회기여 및 참여와 통합을 강화·촉진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민주적 과정에의 훈련, 시민의식 및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양하고 촉진한다.
3. 입법, 정책결정 관계기관에 청소년의 참여의 폭을 넓힌다.
4. 협력적 생활의 독립적, 민주적 형태를 지향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강화한다.
5. 소외되고 연약하며 다른 사람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6.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통로 형성에 우선 순위를 둔다.
7. 청소년참여의 주요 형태의 하나로 청소년 자원정신을 격려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에게 최대한의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전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희망과 에너지요, 열정과 실험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는 아이들을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코피아난(Kofi Anan) 유엔 사무총장의 세계청소년장관회의 개최사 중)

2. 청소년참여의 의의

1) 청소년참여의 개념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 청소년 자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참여에서는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는 또는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갖는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과 성인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 내에서 가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 또한 그들의 생각, 공헌, 활력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Australian Youth Foundation 호주청소년재단, 1999)

청소년참여에 관한 개념규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윈터(Winter)(1997)는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라고 정의하였으며, 하트(Hart)(1997)는 청소년참여를 기본권리라 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호주청소년재단(Australian Youth Foundation)(1999)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과 성인간의 협력개발”이라 정의하고,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의 기여, 아이디어, 에너지로부터 청소년자신과 지역사회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ESCAP(1999)는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 의사결정 및 자원을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청소년 참여의 두 가지 형태

1. 사회적 참여 : 지역사회 수준에서 혹은 교육, 직업 및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2. 정치적 참여 :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de Winter)

2) 청소년참여의 가치

(1) 청소년참여의 필요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욕구나 관심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책형성과정의 매 단계, 즉 토의, 형성, 설계, 실행,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청소년이 참여할 때 보다 더 제 기능을 발한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형성에 관한 한, 성인에 의해 주어진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만일 청소년의 의사반영이나 참여가 부족하다면 청소년을 위해 고안된 사업이나 프로그램 및 정책은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 정책형성에 사용될 정보를 생성, 교환, 분석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은 특히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욕구를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은 자신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며 전략을 개발할 때 주인의식이 생성된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동기를 부여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참신하고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게 하며 이는 다른 관련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 채택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욕구에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ESCAP, 1999).



(2) 청소년참여와 권한강화의 유익성

1. 목소리와 영향력 : 청소년참여는 서비스유형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영향력과 선택권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다.
2. 청소년 개발 : 청소년의 잠재력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사회·정치적 교육 : 토론, 의사소통, 협상,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집단,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4.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 제공된 서비스의 수동적 소비자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러한 서비스는 사회통제의 매개체가 아니라 사회변화의 매개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한다.
5. 새로운 서비스 : 청소년에 의해 제기된 관심사나 문제들을 반영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6. 폭넓은 사회 참여 :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사회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7. 민주주의 :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신뢰할 만한 서비스의 활용을 권장한다(Save the Children, 1997).

청소년은 긍정적인 요소로, 또 문제보다는 기회로 보여질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는 청소년 자신들만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사업,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로 향하는 길을 제공한다. (ESCAP)

(3) 청소년과 함께 일함으로써 얻는 이점

1.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청소년의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2. 청소년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새롭고 특이한 방법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3. 서비스 참여 수단이 청소년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4. 그 설계나 전달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보다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이 된다.

5.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참여는 청소년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 속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깰 수도 있다.

지리적 환경 조성

1.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
2. 청소년의 능력, 자신감, 인식 능력 등의 개발을 도와 그들 스스로 문제들에 도전하고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시민의식과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폭넓은 권리에 대한 자각을 고취한다.

(호주청소년재단의 '청소년 참여 전략')

(4) 청소년 참여의 기능

청소년 참여는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다 자연스럽게 도움으로써 청소년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청소년 참여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다.

1. 민주적 시민권: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을 역량 있고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권한 부여: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한을 강화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참여는 그들의 생활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de Winter, 1995).

청소년은 사회의 모퉁이 돌이며 그들의 참여는 그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다루는 사업, 프로그램 및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필수적이다. 청소년 참여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돕는다는 사실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권리강화의 열쇠인 청소년참여는 그들이 젊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이끌고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의 권리강화는 개발과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청소년은 그들의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하려는 열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2. 청소년은 사회변화, 경제발전 및 기술혁신의 핵심적인 주체이다.
3. 청소년은 그들의 상상력, 이상, 열정과 희망이 사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해야만 한다.

4. 청소년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5. 미래에 대한 사회의 위대한 소망이나 그들 자신의 미래 자체가 그들의 사회 및 인구 집단의 연약성으로 인해 불확실하다.

3) 청소년 참여의 단계

Hart(1997)는 청소년 참여의 원리로서 알려진 선택권(informed choice)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참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논의하고, 이상적으로는 의사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진정한 참여는 오로지 개입된 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공하며 의사결정과 운영에 공헌하도록 격려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김정주, 1999).

8.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7.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6.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5.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
4. 성인이 지시하지만 정보는 제공받는 단계
3.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2.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
1. 성인이 이용하는 단계



[그림 1-1]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

1 단계 - 성인이 이용하는 단계: 사업이 성인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된다. 청소년은 프로그램이나 활동 및 행사의 이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성인은 청소년을 이용하지만 그들을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단계 -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 사업이 성인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된다. 청소년은 행사나 활동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해하며 조직화 과정에서 참여도 없다.

3 단계 -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사업이 성인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된다. 청소년들

은 자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의제를 형성하거나 피드백에 대한 기회는 제공받지 않는다. 성인들은 청소년을 이해관계자로 여기는 척 할 수 있다.

4 단계 - 성인이 주도하지만 정보는 제공받는 단계 : 참여가 시작되는 단계. 사업은 성인이 주도하고 운영하지만 청소년이 그 의도를 이해하며 누가 왜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알고 사업을 이해한 후에는 사업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에 참여한다.

5 단계 -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함으로써 청소년이 자문과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 : 성인이 사업을 고안하고 운영하지만 청소년의 의견이 진지하게 다루어지며 청소년은 과정을 이해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6 단계 - 성인이 주도하며 청소년과 함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 진정한 참여가 시작되는 단계. 성인이 사업을 주도하지만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동등하게 공유한다. 청소년은 사업의 핵심관계자로 간주된다. 이때 성인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유능성이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7 단계 -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 청소년이 성인의 참여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단계. 성인은 관찰자로 존재하면서 청소년의 활동에 대해 인식을 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는 단계이다.

8 단계 - 청소년이 주도하며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 청소년이 사업을 주도·관리하고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관련기술에 대해 성인을 지도자와 코치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 현재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단계는 몇 단계에 속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가장 좋은 참여의 단계는?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에서 Hart(1997)는 청소년의 참여가 항상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8단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의 능력에 맞는 최상의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여에 관한 청소년의 능력은 청소년 참여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 나이, 개별 청소년의 자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4)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 성인 중심주의이다. 성인이 청소년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로 성인은 청소년의 동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행동과 태도이다.

▶ 사회문화적 풍토와 규범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대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이고 솔직한 비판을 저해하는 정치적 분위기, 청소년의 자생적인 집단 및 조직 형성을 경계시하는 분위기 등으로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되고,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육성되어 왔다.

▶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기술부족이다.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경험과 관리기술의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관리할 기술이나 지도력이 부족하다.

▶ 청소년의 의존성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성인중심의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의존성과 참여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청소년참여의 경험이나 그에 대한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참여 기술이 미흡하다.

☺ 그 외에 청소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5)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 기성세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 확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청소년이 갖는 잠재력에 대한 믿음 즉, 기성세대의 청소년에 대한 신뢰이다. 청소년은 신뢰를 받을 때 도전하게 된다. 신뢰를 받지 않으면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는다.

▶ 청소년의 자신감과 경험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자신감을 개발할 기회와 도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실천 등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청소년이 성인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수용하는 확고한 토대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 청소년 참여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청소년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수단의 개발과 시범사업의 전개, 청소년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등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 청소년 활동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이 프로젝트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2. 처음부터 모든 참가자가 조직구조와 권력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들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이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거나 민주적인 참여과정이 허위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3. 청소년참여에 관한 규칙들은 프로젝트의 시작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과 함께 만들고 고쳐야 한다.

4. 모든 청소년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5. 프로젝트의 마지막 순간에 청소년들을 데려오는 것은 '명목적 참여'이다. 어떤 프로젝트든 전 과정이 모든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비록 시작부터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은 그 프로젝트의 내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평가하게 된다.

6. 모든 청소년이 프로젝트의 내력을 충분히 숙지하고, 프로젝트의 범위를 달성하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투명성과 민주적 원칙의 수립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 그 외에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3. 청소년 권리의 이해

1) 청소년 권리의 역사

청소년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만을 따로 규정한 협약은 아직 없고 주로 '아동의 권리'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여기에는 사회통념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나이 어린 아동과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을 하나의 범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인권이 확인·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당시에 아동과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당시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성인 여성조차 오랫동안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참정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미래의 주역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계몽사상가인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어린이’를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 고유의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페스탈로찌, 프뢰벨 등 근대교육 사상가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학습의 주체로서 아동의 인간성이 존중되었다.

이러한 인권사상의 발전에 힘입어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고 그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선언은 그 대상을 일반 남녀로 하고,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을 인류의 의무라고 인정하는 이 정신은 이후 ‘아동의 권리 선언’ (195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으로 계승된다.

‘아동의 권리 선언’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국제문서이다. 이 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네바 선언에 비교할 때 한층 상세하고 넓은 관점에서 그 내용을 확대·개선한 것이다. 기본 정신은 성장하고 있는 아동, 즉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와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선언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아동의 인권선언 사상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청소년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이용교·김영지·임지연, 1999).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는 1장의 ‘국제문서를 통해 본 청소년 참여권’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

너, 그거 아니?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한국이 최초로 아동권리를 선언했다는 사실....

한국에서 처음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제네바선언' (1924년)보다 한 해 앞선 1923년이었다. 당시 우리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새싹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씩씩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바로 그해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가 소년운동선언에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하였다.

- ◆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 ◆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 ◆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권리공약은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무상 또는 유상 노동을 폐지하며,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도록 역설하였다.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 연소노동의 금지, 적절한 교육과 여가시설의 제공 등의 정신은 이후 '어린이헌장' (1957년)으로 이어졌다.



2) 이유있는 항변 : 청소년 권리 향유의 근거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한 연구는 그 동안 실질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성인보다 청소년이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가정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권리 행사가 청소년에게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권리를 너무 많이 허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왔던 기성세대에게 반대로 청소년이 권리를 너무 많이 함부로 제한받을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최윤진, 1999).

- ▷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 ▷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 ▷ 권리행사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제시할 것인가

(1) 일반적으로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확일적으로 구분하여 성숙과 미성숙의 분할 경계로 삼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이 서서히 일어나고 또 각 개인에 따라 발달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또 성숙의 의미가 인간의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 역할규정 등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할 때, '연령'의 기준은 그 분할점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권리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권리구분의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령기준의 확일적이고 고정적인 적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개별적 성숙차이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령기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의 능력 비교 기준으로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여기서 능력은 주로 인간의 이성작용이 중심되는 '합리성'의 의미로 해석하고 합리성 비교를 위해서 인간발달 과정 중에 인지능력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성인능력과 비교할 청소년 대상을 중기(약 15세) 이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비교할 성인 능력의 비교수준은 일반 정상적 성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능력 수준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발달이론, 모쉬맨(Moshman)의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연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인지능력이나 도덕성, 자율성 등은 주로 10대 초반(11~12세경)에 이미 성인 수준의 발달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5세 이후 청소년들과 성인과의 능력이 다르다든지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능숙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다시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경험 없이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 순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실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이 실수를 통한 성장의 기회와 경험이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을 '실제 능력' 소유자인 '현재 성인'과 대별되는 '잠재 능력' 소유자인 '미래 성인'으로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다양한 권리행사의 경험이 잠재 능력의 개발과 미래 성인으로서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권리행사의 경험이 주어지야만 비로소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하다.



우리가 능력의 발달이나 성숙과정을 이야기 할 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심리학적 발달이론들이 보여주듯이 능력의 발달이 생애적으로 짜여진 단계대로만 발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사실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선택이나 판단에 있어서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은 인지적·도덕적 판단능력의 부족보다는 성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권리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 가운데에는 청소년이 의사결정, 선택, 사회참여 등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경험과 기회가 제한되면 과연 언제 그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최윤진, 1999:17)

성년



성숙은 자연적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그것은 권리를 부여받을 때 자라기 시작한다.

너, 그거 아니?

스페인에는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가 있대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는 어린이의 나라 '벤포스타'가 있다. 물론 UN이 인정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있고, 주민 총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도 있다. 1956년 실바 신부와 열 다섯 명의 아이들이 세운 벤포스타는 인종과 종교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교육 공동체이다. 네 살에서 열다섯 살 사이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곳의 주민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치능력을 보면 성숙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 다양한 권리행사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었을 때, 학생회장 선거가 논란거리였던 적이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학부모도 참여하는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록 초등학생들이 구성한 학생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행력 있고 의미있게 꾸러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한해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지만, 뒤의 주장에는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다. 어린이는 항상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정치적 권리와 권한을 가지기에 어리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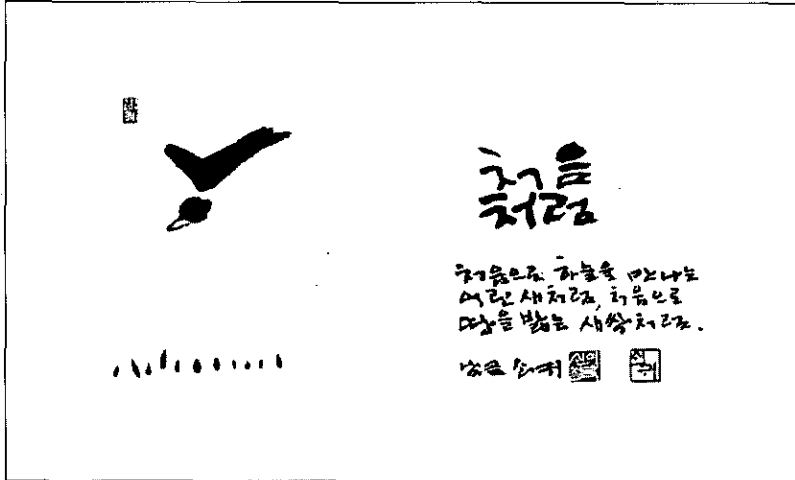
그러나 어린이는 언제 시민이 되는 것일까? 우리의 법으로는 20살이 될 때다. 그렇게 법은 정치적 성숙을 자연적 성숙의 문제로 삼는다. 그러나 정치적 성숙은 결코 자연적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을 때 자라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왜 20살이어야 하는가? 왜 12살이어서는 안 되고 7살이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그런 나라, 어린이가 나이 제약 없이 정치적 시민권을 가지는 나라 벤포스타가 있다. 실바 신부가 1956년에 스페인 오렌세 근교에 버림받은 어린이 15명과 함께 창설한 이 어린이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성인과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성숙하다. 그들은 공직에 취임하며, 진정한 자치를 실천한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철공소 일이든 주유소 일이든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럼 공부呢? 벤포스타에서 아이들은 수업료를 내는 대신에 돈을 받고 공부한다. 이 나라에서 공부하는 노동도 놀이도 아닌 기묘한 고통이 아니라 공화국이 필요해서 어린이들에게 시킨 일이다. 그러니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그 대가로 급료를 준다.

이렇게 벤포스타는 성숙이 권리의 조건이 아니라 권리가 성숙의 조건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러니 청소년 보호법 같은 발상은 이제 우리도 집어치울 필요가 있다. 성인이 어린이에게 주어야 할 것은 보호가 아니라 권리고,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조언하는 것이다. (김종엽/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2001. 1. 16.)



-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1998). 외국의 청소년참여 동향과 우리의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
 (pp. 75-98).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정주(1999). 청소년참여.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총론(pp. 477-512). 서울 : 양서원.
 이용교 · 김영지 · 임지연(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동향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 · 고성혜 · 이희길(1996). 청소년 인권 보고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천정웅 · 김영지 · 임지연(1997). 청소년 참여증진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천정웅 · 김영지 · 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서울 :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윤진(1999). 청소년 권리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제1호, pp. 5-23.
 The Australian Youth Foundation. (검색일 2001. 8). <http://www.ayf.org.au>.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1999). *Youth Participation Manual*.





청소년 참여도를 평가해 봅시다

청소년단체·시설이나 청소년 자치모임 등 청소년 관련 조직과 사업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호주청소년재단(AYF)이 제안한 청소년 참여도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참여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청소년참여지표를 활용한 참여도 평가

1) 사업,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 공식화

조직을 구성할 때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에 대한 혜택, 담당 직원이 바뀐 후 청소년 권한강화 과정의 지속성, 청소년의 참여가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함, 청소년 권한강화의 목적, 조직 비판에 대한 개방성, 조직의 기대, 조직의 장기적 책무, 조직의 청소년에 대한 투명성과 정직성, 과거 권한 강화과정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 조직을 위한 자원조달, 어느 정도의 권한을 포기하고자 하는 조직의 의지 등.

정책문서는 청소년 참여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연관시키기 위해 조직의 고하를 막론한 모든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은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정책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목표와 얻게 될 혜택을 진술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평등한 기회정책'이나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문헌들과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또 그 위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과 개인의 권한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다루어야 한다. 넷째, 조직과 관련한 장벽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실행에 필요한 인원, 훈련, 재정을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책조정의 책임을 담당할 사람과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책조정자는 전문가와 청소년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지정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직원 및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며 조직에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청소년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청소년 참여의 수준

0. 비참여

- (a) 성인들이 사업을 전적으로 관할한다.
- (b) 청소년들은 정보를 제공받을 뿐이다.

1. 수동적 관여

- (a)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참여시키려는 미온적인 노력이 있다.
- (b) 청소년의 의견은 표면적으로만 다루어진다.

2. 영향

- (a)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받고 그들의 참여가 진지하게 이루어진다.
- (b) 영향력에 대한 인지와 그에 따른 주인의식이 개발된다.

3. 협력관계

- (a) 진정한 청소년 참여를 향한 공동의 구조적 노력이 이루어진다.
- (b) 성인과 청소년간에 의미 있는 협력관계가 조성된다.

4. 자기 형성

청소년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이 위임되고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원할 경우 성인의 원조가 제공될 수도 있다.

3) 청소년 참여지표(YPIs)

다음의 청소년 참여지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바람직한 청소년 참여 수준이 꼭 4단계인 “자기 형성”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청소년 참여의 범위와 그 유용성은 작업분야, 대상집단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청소년 참여의 목표로는 종종 위에서 3단계로 지칭된 “협력관계” 혹은 “의사결정의 공유”로 정의된다. 4단계에서는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이 청소년에게 있고 따라서 성인과 협력관계에 대한 결정은 청소년이 한다.

청소년은 다양한 양상으로 각기 다른 단계에서 다양한 사업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의 평가를 위해 아홉 세트의 지표들과 점수들이 제안되었다. 지표들의 사용 개수는 운영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반드시 사업에 관계된 지표들만 사용되어야 하며 해석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낮은 점수가 우려된다고 해서 지표들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종류의 사업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지표들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르며 혹은 더 많은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 경우, 해석 절차나 지침도 적절하게 수정하여 적용한다.

1. 욕구 분석과 목표 설정

- ⑥ 성인들이 사업을 고안하고 실행하며 청소년을 대상집단으로 삼아 정보를 제공한다.
- ① 초기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의견이 상정되나 그 후에는 무시된다.
- ② 사업실행 시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가능하나 목표는 성인에 의해 설정된다.
- ③ 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토론하고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며 그것을 실행한다.
- ④ 청소년이 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성인의 참여를 선택한다.

2. 정보와 의사교환

- ⑩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없고 그들의 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는다.
- ① 청소년에게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청소년 우호적이다. (일반적 정보 제공)
- ② 정기적 의논모임이 형성되었다. (양방향 정보 교환)
- ③ 성인과 청소년간에 의미있는 교환이 이루어진다. (협력)
- ④ 청소년들이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능하다면 성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3. 의사결정

- ⑩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 ① 청소년의 의사가 구해지기는 하나 심각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 ② 청소년의 관점이 중요시되고 정기적으로 반영된다.
- ③ 의사결정과 활동이 공유되고 청소년의 반응이 중요시된다.
- ④ 청소년이 자원활동이나 사업방향에 권한을 행사하고 가능하다면 성인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4. 행정

- ⑩ 청소년 임원은 없다.
- ① 청소년은 가끔 자발적 수준에서 미미한 일을 돕는다.
- ② 청소년이 부기, 타차기부터 조사나 자료수집에 이르는 행정적 활동에 구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③ 청소년이 사업의 일상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 ④ 청소년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가능하다면 성인의 도움을 받는다.

5. 활동 설계와 실행

- ⑩ 성인에 의해 고안되고 운영된다.
- ① 활동 고안 시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다.
- ② 청소년이 부분적으로 활동을 고안하고 활동 중 일부분을 운영한다.
- ③ 성인과 협력 속에서 청소년이 모든 활동을 고안하고 운영한다.
- ④ 청소년이 모든 활동을 고안하고 운영하며 가능하다면 성인의 도움을 받는다.

6. 홍보

- ⑩ 청소년의 참여가 없다.
- ① 청소년이 홍보캠페인에 참여는 하지만 캠페인 조직구성원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 ② 청소년이 캠페인운영에 참여하도록 격려 받는다.
- ③ 청소년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공공집회나 캠페인에 참가하고 혹은 정책문서 작성이나 공공토론 등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④ 청소년이 홍보문제를 담당하고 가능하다면 성인의 도움을 받는다.

7. 서비스, 지원과 교육 직원

- ⑩ 성인에 의해서만 지원이 행해진다.
- ① 지원, 서비스, 교육 관련 문제에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다.
- ② 청소년의 의견이 가끔 반영되고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상담가나 교육가의 역할을 한다.
- ③ 대상집단의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의 상담가나 교육가로 훈련받으며 성인 상담가나 교육가와 함께 일한다.
- ④ 청소년이 대상집단에 대한 유일한 상담가요 교육가이며 가능하다면 성인으로부터 훈련이나 지원을 받는다.

8. 피고용인

- ① 청소년 피고용인이 없다.
- ① 청소년이 사업목표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 고용된다.
- ② 몇몇 청소년이 동료들과 관련된 일에 전문가로서 고용된다.
- ③ 청소년이 전문가로 고용되고 관리자가 되기도 한다.
- ④ 청소년 전문가에 의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9. 감시(모니터링)와 평가

- ① 성인들에 의해서만 실시된다.
- ① 청소년이 감시와 평가에 관여한다.
- ② 청소년이 감시와 평가 결과에 관여한다.
- ③ 청소년이 감시와 평가 도구를 설계하고 성인과 함께 일한다.
- ④ 청소년이 사업을 주도, 설계, 실행하고 사업결과를 보고하며 가능하다면 성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4) 평가절차

청소년의 사업참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성인이 반드시 아홉 개의 지표들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청소년 참여도 평가시트」양식 참조). 이는 각자가 사업을 개인적으로 평가한 후 집중 그룹토의를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만장일치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모임에서 의견 차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할 수도 있다. 단, 지표들은 청소년 참여의 범위를 측정할 뿐 그러한 참여가 사업이나 대상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 사업에 미치는 청소년 참여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장기간의 연구, 자료 분석, 집중 집단토론, 심도 깊은 면접, 관찰을 요구한다.

총 점	단계	평 가
0-7	0	사업이 전적으로 성인에 의해 움직여 진다.
8-15	1	사업을 성인이 주도하지만 청소년도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단계나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은 없다.
16-23	2	청소년이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한다.
24-30	3	청소년이 사업의 모든 단계와 양상에 관여하고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성인과 상당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
31-36	4	청소년이 사업을 주도하고 사업의 모든 양상과 중요한 단계를 책임진다. 성인은 역할이 없거나 있다 해도 그 영향력이 작다.

- ☞ 참여도 평가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러가지 청소년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도는 몇 단계인지 이야기해 본다.

지표 번호	청소년 점수	성인 점수	논평	제안사항
1. 욕구분석과 목표 설정				
2. 정보와 의사교환				
3. 의사결정				
4. 행 정				
5. 활동설계와 실행				
6. 홍보				
7. 서비스, 지원, 교육 직원				
8. 피고용인				
9. 감시와 평가				
총 정				



2. 면접과 회의를 통한 청소년의 참여도 평가

다음은 호주청소년재단(AYF)에서 제안한 청소년 참여도 측정 방법으로 사업과정에서의 청소년의 참여 수준과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자와의 인터뷰 방법이고(「사업운영자 면접시트」양식 참조), 두 번째는 청소년 참여자들 중 표적집단(focus group)과의 작업이다. 이 방법의 초점은 질적인 정보를 구하는데 있지만 그 결과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수량화된 가치와 범주로 전환될 수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지 수정·보완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질문지들이 정기적인 내부 자체평가와 외부의 객관적 평가에 활용되도록 한다. 평가과정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단순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실행한다.

청소년 표적집단에 대한 면접의 경우(「청소년 표적집단에 대한 질문지」양식 참조), 사업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표적집단 청소년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여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에 대해 토론하고 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집단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청소년이 사업평가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집단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항들을 기록할 사람도 한 명 지명되어야 한다. 표적집단면접 방법은 면접진행자와 여러명의 면접대상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응답자들간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공식적인 설문조사에서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1) 집단 평가회의의 진행 시 유의사항

- ① 서기: 참가자들은 서기를 뽑아 토의를 기록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도 무엇이 쓰여지고 있는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전지에 기록한다. 참가자들이 기록의 정확성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만약 이것에 실패하면 나중에 도출된 결론이 의심받게 된다.
- ② 의장: 의장의 역할은 회의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이 회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 회의를 끝내는 것이다. 의장은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한다.
 - 토론이 시작되기 전 회의의 목적을 참가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
 - 처음부터 집단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를 들어 이것이 명목적 집단절차라면, 참가자 자신들이 선출된 대표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 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토론을 주도하여 목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회의를 장악하거나 집단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한다. 각 참가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요구된 역할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지 알려준다.
- ③ 의견: 적절한 한도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비판적이거나 비교하는 의견은 되도록 자제하도록 한다.

2) 준비사항

- 장소 : 초청된 집단의 크기에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고 조명이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여 참가자들이 회의도중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장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석 확인 : 집단절차를 시작하기 전 참가자들이 자기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출신 기관이나 집단, 기타 집단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 소개 : 착석 후 각 참가자들은 간략히 자신을 소개한다. (2분 미만) 이름표를 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손으로 적은 이름표면 충분할 것이다.
- 장비 :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잘 배치·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절차의 성격에 따라 OHP, 칠판, 전지 및 스탠드, 펜이나 종이 등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사용될만한 양보다 더 많은 종이를 준비해 둔다.
- 초대 : 문서로 된 초대장을 발급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공식적 절차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구두 초대도 충분하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모든 사람들이 회의 날짜, 시간, 장소와 소요시간을 알 수 있도록 확인시켜야 하고, 회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초청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 좌석 : 집단토의에 알맞게 좌석을 배치한다. 극장식 배치보다 원형배치가 더 적절하다. 의자를 충분히 준비하고 만일을 대비해 여분을 준비한다. 어떤 사람이 참석치 않아 공석이 생길 경우 빈 의자를 치워 의자가 참가자들 사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집단 크기 : 집단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집단의 크기는 15명이다. 15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렀을 경우 집단을 나누어 활동을 실시한다.
- 시간 : 회의가 정시에 시작하고 끝날 수 있도록 한다.
- 회의 전 준비사항 : 참가자들이 회의 전 읽어야 할 자료가 있거나 해야 할 준비사항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한다. 정보를 너무 일찍 전달해 참가자들이 정보에 대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

The Australian Youth Foundation. (검색일 2001. 8). <http://www.ayf.org.au>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1999).
Youth Participation Manual.

이 름 :

직 위 :

소 속 :

사업명 :

날 짜 :

목 표 : 이 사업은 어떤 형태의 청소년 참여를 바라는가? 청소년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 상 : 대상그룹을 기술하라

전 략 :

- 청소년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 이 중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이었는가? 그것들이 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어떤 요소가 주요했는가?
- 어떤 전략들이 비효과적이었는가?
이 전략에 장애가 된 점은 무엇이며 비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유용한 전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설명해 보라.
- 참여장애 극복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결 과 :

- 청소년이 어떻게 사업의 기획 · 운영 · 평가에 참여하는가?
구체적인 행사, 활동, 참여의 수준, 참여한 청소년 수와 형태를 기술하십시오.
- 참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평 가 :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식측정 :

- 기관의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 “참여”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참여의 성격 :

- 사업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해 봤는가?
당신의 역할과 동료참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한 번이라도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 받은 적이 있는가?
당신의 공헌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꼈는가?
- 이러한 활동에 성인 직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참여를 위해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쳤는가?
예를 들어 어떤 정보나 훈련, 실습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 적이 있는가?

평 가 :

-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무엇인가?
- 참여에 장애가 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증진될 수 있을까?
- 이 활동에 참여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제2장 청소년 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1. 청소년 자치활동과 학생자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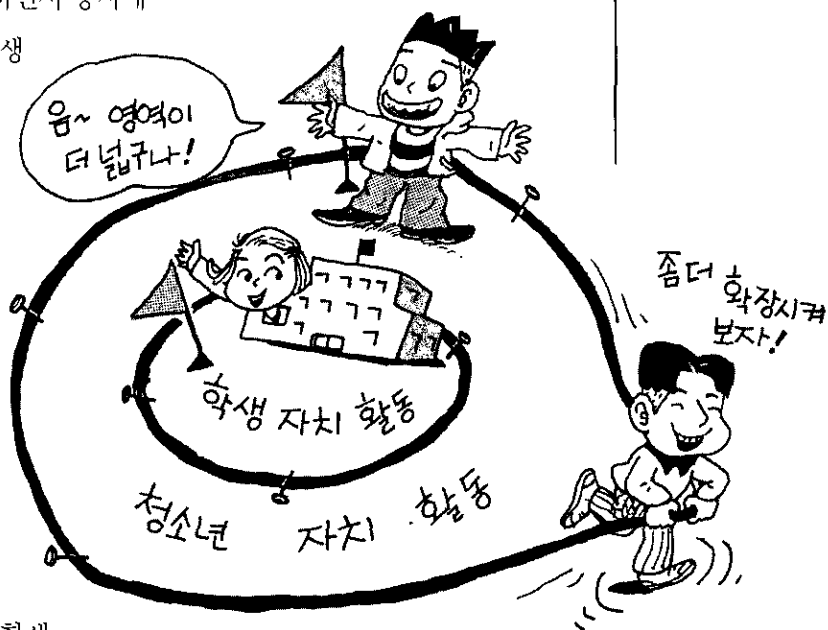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모든 청소년 활동들(youth activities)을 말한다. 과거에는 흔히 ‘자치활동’이라 하면 학생자치활동이라 하여, 학생 신분에서 요구되는 자치활동으로 제한·인식해 단순히 학생회활동을 포함한 학급활동, 클럽활동(CA)¹⁾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기”라는 이른바 학령인구의 관점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기의 생활양식을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란 사회적 지위에 제한하려는 기존 사회규범의 개입에 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청소년 생활장면에서 학교 이외의 생활영역이 확장, 그 의미가 중시되면서 단순히 자치활동의 내용과 공간을 학교 안으로 한정짓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청소년 특기적성교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학교 이외의 장면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이를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더욱이 주 5일제 수업의 실시가 예고되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요구되면서 교육은 곧 학교교육이며 청소년은 곧 학생이란 등식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1) 흔히 클럽활동(club activity)과 동아리활동(circle activity)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클럽활동과는 달리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청소년자치활동을 말한다. 동아리활동 중에는 학교연합동아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 전국적 혹은 국제적 조직으로서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동아리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동아리활동은 학업청소년 이외의 청소년들이 활동주체로 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학업청소년중심의 클럽활동과는 대비된다.

반면에 클럽활동이란 학교에서 음악·미술·연극·스포츠 등에 공통된 흥미나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자치활동 조직을 만들어 수행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클럽활동은 교과교육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특별교육 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된다. 다만 클럽활동은 취미나 흥미를 함께 하는 집단활동이므로 학급이나 학년의 테두리를 두지 않으며, 교과학습이 일정한 교과과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자발적·창조적인 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현실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껏 청소년자치활동을 학생자치활동이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학교 외의 다양한 장면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치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으로써 ‘청소년자치활동’이라 이름짓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청소년이란 개념은 미래의 중요성을 내재하면서 동시에 현재 삶의 의미도 중시되는 용어로 학생이란 개념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1998년 10월에 새로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참고: 청소년헌장, 새로운 청소년헌장). 이는 지금껏 학생 신분에서 오늘을 유예해야 했던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그 권리를 신장하고 현실에 대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자치활동은 학생자치활동이란 개념보다 ‘청소년권리’와 지금 현실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활동’이란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생활의 장면을 보다 확장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에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씨줄로, 이질적이고 독자적인 세대문화의 폭발적인 산출과 그 확산력이 날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자치활동을 준비하는 청소년이라면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서야 한다. 즉, 청소년 자치활동이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의 기반 위에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치활동의 내용에는 학교장면에서 요구되는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위원회 등의 자치회 모임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청소년자치활동을 장면(학교 - 학교 외)과 내용(학생회, 동아리, 위원회 등)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다만 청소년자치활동이란 제목으로 각 장면과 내용에서 응용과 변용이 가능한 원칙적 조직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청소년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응용 활동을 기대한다.

2. 청소년 자치조직의 구성과 활동단계

1) 자치조직의 구성단계

청소년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구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조직을 이해하는 데에 더 쉬울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직이란 개인과 집단의 활동목적과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즉, 조직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서는 목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개인·집단과 같은 부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치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치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급히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다가가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탐색과 준비단계, 자치활동의 초기단계, 자치활동의 안정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1] 참조).

(1) 탐색과 준비단계

탐색과 준비단계는 이른바 자치활동 기반을 준비하는 단계로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처음엔 몇몇 친구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자치활동의 목적을 가다듬고 더 많은 회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 같이 참여하기를 권유하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자치활동 목적에 대해 공감하는 다른 친구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활동목표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다듬고 선정하면서 동시에 활동에 도움이 될 조언과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외부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수집·획득하는 활동들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활동목표를 구안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흥미와 관심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자치기구 혹은 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포인트 1 참조).

또, 구안된 활동목표와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한편으로는 외부적으로 자치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인적 자원(교사, 청소년지도자, 문화활동전문가 등)과 물적 자원(예산지원, 물품지원 등) 등의 지원체

제를 만든다. 특히 준비단계에서 활동목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자치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비용과 노력 등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면에서 효과적이다.

친구들의 무관심과 냉담

포인트 1

자치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꼽으라면, 자치기구 혹은 자치활동에 대한 친구들의 무관심과 냉담이다. 여러분들이 자치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준비단계에서 가장 무기력한 경험을 주는 경우는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때이다. 사실,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치기구나 자치활동은 무의미하다. 만약 자치활동을 준비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자세를 취할 때에는 다음의 질문들을 찬찬히 자문해 보자.

- 1) 나는 친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달리 알고 있지는 않는가?
- 2) 친구들의 요구와 자치활동의 목표가 다른가?
- 3) 자치활동과정에 있어 친구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 4) 자치기구의 활동목표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홍보하였는가?
- 5) 소외시킨 친구들은 없는가? 의견수렴 · 결정과정에서 독단적인 판단을 고집하거나 다른 의견들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 6) 친구들간에 편이 갈려 있는가? 그렇다면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에서 조화롭고 균형있는 태도를 견지했는가?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러한 요구와 의견들을 자치기구를 구성하고 자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수렴하고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마음에 두자.

- 1) 활동의 주체는 소수가 아닌 친구들 모두이다.
- 2) 항상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들을 수렴하자.
- 3) 활동목표를 설정하거나 활동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기대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자.
- 4) 충분한 의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이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 5) 가능한 한 모든 매체와 방법을 통해 활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들을 널리 홍보하자.



(2) 자치활동의 초기단계

자치활동이 가능한 내외부적 조건과 상황이 성숙되면, 둘째 단계인 자치활동의 초기단계 즉, 자치활동의 실행단계로 넘어간다. 준비단계를 통해 구성원인 개인들의 고유한 성격과 능력, 태도가 드러나고 조직구성에 필요한 하위조직(소집단)들이 나타난다. 또 개인과 소집단의 적절한 지위와 역할이 분담되면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점진적으로 구성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공식적 조직구조의 초기모형을 구성한다. 즉, 조직의 전체모형이 구안되면서 필요한 하위조직을 두게 되고, 각각의 하위조직에 적절한 개인구성원들이 배치되면서 짜임새 있는 조직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체제이론에서는 조직체계의 다섯 요소(개인, 공식적 조직, 소집단, 지위와 역할, 물리적 장면)라 부른다(Muchinski, 2000 : 283).

이 단계에서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의 선출과 동의, 구성원 개인과 소집단에 대한 적절한 지위와 역할의 분담, 안정성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모형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특히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선정된 활동목표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통한 지도자 곧 리더의 선출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갈등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절한 집단 및 개인의 역할분담 역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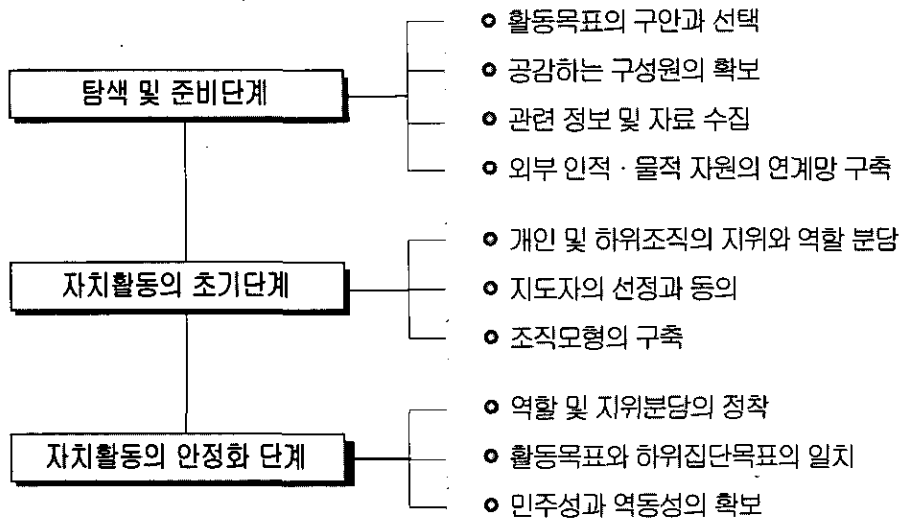
자치활동 조직



(3) 자치활동의 안정화 단계

초기단계가 갖는 여러 시행착오와 미숙한 초기 경험의 단계를 거둬하면서 청소년자치조직은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이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자치조직의 안정화 단계란 자치활동목표가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준되어진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활동목표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의 역할 및 지위의 분담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하위조직(소집단)이 전체 조직의 활동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치되어 있으며, 지도자의 승계 역시 이를 중심으로 안정화되어짐을 의미한다.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며 기능적으로는 효율적인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2-1] 청소년자치활동 구성단계

이 단계에서 조직은 조직의 응집력을 기반으로 민주성과 역동성을 얼마나,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자칫 안정화단계에서 조직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현상을 보이기 쉬우며, 또 이른바 매너리즘이라 불리는 관성적 모습(타성에 젖어 스스로의 계발을 게을리하고 안주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취하기 쉽다. 독단적 판단 등의 권력집중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소집단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체계 및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을 확고히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민주적 대의장치라고 한다.

아울러, 역동성의 유지와 추구는 안정화 단계에서 조직 전체가 한 단계 더 진일보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가 매너리즘적 요소를 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합의되고 추구하였던 활동목표를 개선·보완·수정하거나 한편으로는 활동목표의 개선·보완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매너리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 자치조직의 활동단계

자치조직에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활동 자체가 개방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치조직의 운영이 민주적이면서 전략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전략적 운영이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넓게 보는 수준에서 점차 세밀하게 보는 수준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획과 실행, 평가 등 각 영역에서의 유기적인 설정과 실천을 의미한다(Kaufma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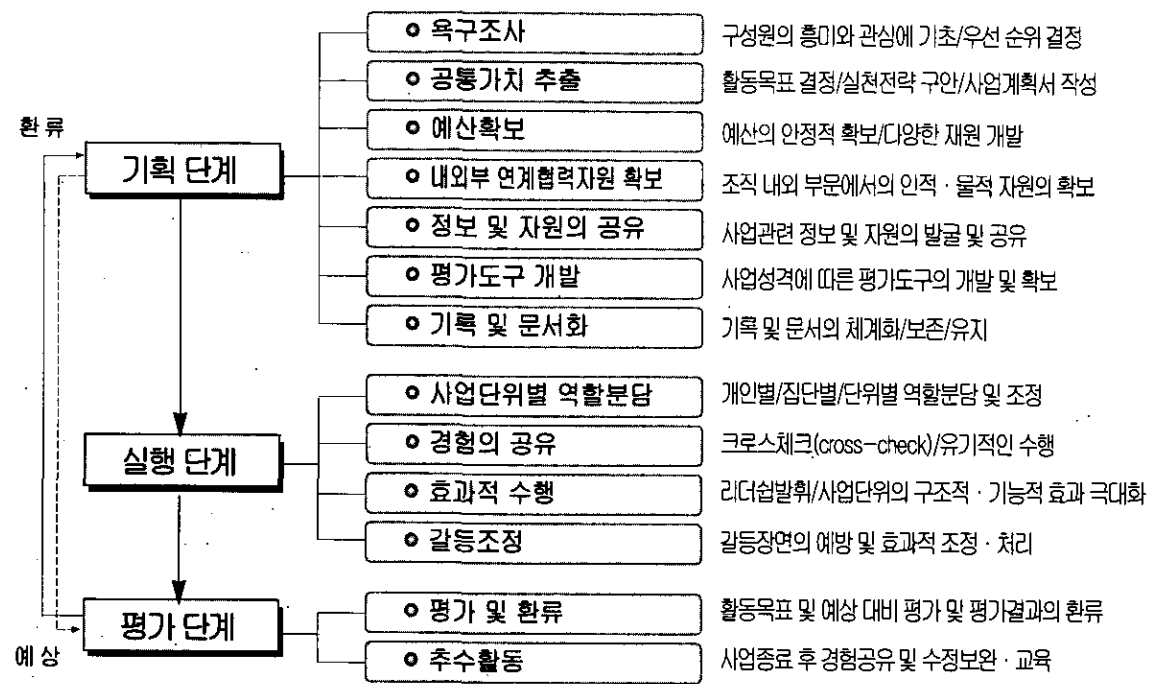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위원회, 학생자치기구 등 청소년자치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절차는 크게 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각각의 단계 아래에는 구체적인 하위 활동 내용이 자리잡아 미시적인 단위에서 요구되는 수행과제가 거시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전략과제를 충족시키는 기본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그림 2-2] 참조).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분은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활동의 절차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1) 기획단계

먼저 기획단계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이며 또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꼼꼼히 기획단계에서 요구되는 수행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또 달성한다면, 실행 및 평가단계의 어려움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해 시행착오의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기구일수록(경험이 없는 조직일수록) 기획단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한 번의 실패경험이 두 번째의 시도와 노력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자치활동에 있어 기획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 먼저, 구성원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욕구조사를 들 수 있다. 자치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협력이란 점을 인정한다면, 욕구조사는 사업활동에 있어 지혜로운 첫 출발이다. 욕구조사를 통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욕구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욕구들을 우선 순위화 할 수 있고, 또 공통적인 가치들을 뽑

아낼 수 있다. 또 이런 공통적인 가치들은 활동목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울러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 이러한 실천적인 전략들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활동의 목적과 목표, 배경과 기대효과, 홍보전략 등으로 구체화된다.



[그림 2-2] 청소년자치활동의 활동단계

한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중요한 구성요인으로선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물질적 자원은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일러 ‘예산계획 및 확보’ 그리고 ‘연계·협력이 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확보’라 한다. 예산은 활동을 지지하는 물적 기반으로 예산이 궁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자치조직으로서 는 항상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사업활동을 하기에 앞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다양한 자원의 개발가능성을 꼼꼼히 진단하고 타진해야 한다(포인트 2 참조). 학교 장면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풀 수 있으며, 학교 외부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을 보조 혹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치활동에 있어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활동자체가 위축된다. 이전부터 해 왔던 행사나 일들을 못하기도 하고, 부득이하게 활동규모나 질을 전에 비해 축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활동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자.

1) 예산부족과 관련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열자

예산이 없어서 의미있는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심하게는 청소년자치기구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을 때 의외로 이러한 상황을 구성원 내부나 혹은 외부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공론화' 한다면 나만의 걱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걱정으로 확장되어 함께 극복하는 과제로 만들 수 있다. 즉, 다양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있어 친구들이나 혹은 외부의 협력자원들이 뜻하지 않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론화의 의미는 모두의 의견으로 합의된 대안들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을 모아준다는 데에 있다. 의견을 주장으로 치환시키는 절차가 바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다.

2)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자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예산 및 결산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말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혹은 지역사회인사 등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어른들에게 자치기구의 중요성 및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적극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자. 이때 학교운영예산에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러한 예산은 학생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임을 주시시키자. 만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주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사실 예산과 관련하여 학생자치활동은 큰 걱정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 여러분들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집행이 관건일 뿐이다.

3) 학교 이외의 장면에서는 다양한 재원을 '적극' 개발하고 발굴하자

통상 청소년자치활동에 있어 예산이 부족한 경우 수익사업을 병행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거니와, 자칫하면 여러분들의 순수한 활동 목적과 동기가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제로 스폰서를 '잡기 위해' 뛰어 다니는 일은 괴로울 뿐만 아니라 바자회, 티셔츠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엔 준비자체만 해도 벅차다. 차라리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만 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예산 지원방법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낫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항목에 청소년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공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청소년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도 찾아 보면 적지 않다. 이때 평소 도움을 주거나 잘 아는 학교 선생님, 청소년지도자가 있다면 적극 자문을 구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익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항목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지원을 받는지를 도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의 재원개발에도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활동'을 위한 노력임을 유념하면서.

이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 의지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산지원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엔 다양한 재원을 개발하여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흔히 시민단체(YMCA, YWCA 등)나 학생자치기구에서 바자회, 물물거래장터, 티셔츠 판매 등 수익사업을 병행하거나 기업체 등에서 스폰서를 받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병행하거나 스폰서를 받는 방법은 자칫 활동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퇴색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 내외부문에서 연계·협력이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확보해 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활동 내용과 성격에 따라 유용하게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원들을 미리 확보하면 기획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장소 및 외부강사 섭외,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적의 정보와 자원들을 미리 갖고 있다면 이런 과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 및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사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자원을 발굴·수집하고, 발굴·수집된 정보와 자원들은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도록 한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학생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준비한다면 학생자치기구의 역사적 변천과 유래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때 관련 정보의 수집은 기획단계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시키는 기초 자료로 작용하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관련도서들을 참조하는 문헌조사,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의 자료 및 참가자들의 자문을 통해 수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 역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만 여러분의 활동방향 설정 및 내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한편,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준비해야 한다. 흔히 기획단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평가도구의 개발 및 준비는 당초 여러분들이 목표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주며,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사업활동을 기획, 실행할 때에도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이자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준비를 미루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

평가방법으로는 주체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활동수행자, 혹은 활동참가자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유형, 방법에 따라 5점 척도, 4지 선다형 등의 설문지 기법, 진술형 기록지, 현장참여관찰 등의 유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 절차에 따라 사전평가, 과정평가, 종결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 등 다양하므로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구안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활동이 어떤 효과를 가질 지에 대해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사업계획서의 기대효과라는 항목으로 기술되는 평가의 예상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치활동이 갖는 의미를 구성원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활동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요건이 된다.

아울러 이런 모든 기획단계의 수행과제들은 기록으로 남겨지고, 또 일정한 틀로 구성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을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은 실행단계 및 평가단계 등 이후 단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한다. 기록은 삶의 역사이자 동시에 후배들에게도 활동이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실행 단계

이제 이러한 기획단계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실행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실행 단계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꼼꼼히 준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애초 준비한 단위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실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간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통상 어떤 사업에서 개인들은 일정한 과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들이 효과적인 팀웍을 발휘하고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에는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업단위별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역할분담을 기능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구조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활동에 따른 역할분담이 체계를 갖춰 구성되어졌는지를 말함이며, 기능적인 조정이라 함은 분담된 역할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함을 말한다.

대체로 프로그램 리더가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 개인별, 집단별, 단위별 역할분담을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은 사업활동의 과정 내에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교차확인 작업은 각자의 역할분담 내에 서로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상호 확인케 함으로써 실행단계에서 자칫 있을 수 있는 실패경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정기법이다. 이때 조정자는 프로그램의 리더로써 적절한 지도력과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사업단위별, 집단별, 개인별 기능을 극대화하고, 사업활동 주체의 구조적 효과도 최대화하여 기획단계에서 예상하는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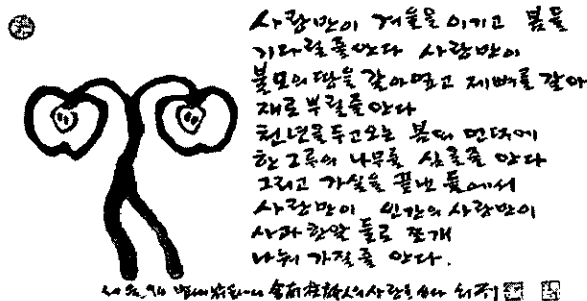
한편, 조정자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활동주체들간의 그리고 참여하는 대상자들간의 갈등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때는 가급적 신속히 조정·처리해야 한다. 흔히 어떤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고, 갈등과 긴장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때 당황은 금물이다. 예견하였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조치를 생각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면 갈등상황을 가급적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도 차차 경험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갈등조정경험이 풍부한 조정자가 리더의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하고, 가급적 숙련된 지도자나 외부 인적 자원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평가 단계

실행단계가 끝났다고 활동은 종료되지 않는다. 활동종료의 시점은 평가라는 단계를 지나야 한다. 평가단계에서 요구되는 수행과제는 실행 이후의 결과가 애초 예상했던 활동목표나 기대효과와 대비하여 어떠한지를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만약 결과가 당초 기대한 활동 목표와 기대효과에 크게 못 미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면, 기획이나 실행단계에서 무언가 잘못 수행된 것이다. 이를 밝혀 수정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가 바로 환류(feedback)이다. 만약 기획이나 실행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획단계에서 구안했던 평가방법이나 도구, 혹은 평가절차가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단계에서는 실행 이후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단계 자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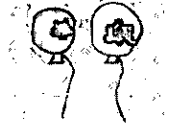
한편, 사업이 종료된 이후 경험들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기획·실행할 때에 이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체로 사업종료 후 구성원들은 활동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의 형식으로 문서화한다. 실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토론은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적된 점들 중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는 추후에 적절한 교육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일러 ‘추수활동(follow up)’이라 한다.

사업보고서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는데 가급적 문서형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진과 그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캠코더를 사용한 동영상 보고서도 활용되고 있다.



3. 자치조직의 운영

최근의 사회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전체주의적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적 질서와 가치관이 증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만큼 타인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과 운동도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흐름이 함께 증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는 무관하지 않다. 개인의 다양성은 타인과 공동체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며 이러한 존중된 개인의 가치가 전체에서 수용될 때 참다운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자치는 이런 점들을 배경으로 하여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보장하고 그 책임을 묻어가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소양과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청소년 자치조직의 운영은 이러한 기초들 즉, 민주주의적 소양과 공동체적 삶의 양식들을 체득하는 경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자치조직의 운영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개인들간의 가치가 부딪칠 때는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며, 소수라 하더라도 다수로부터 일방적인 지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동체적 삶이란 차원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운영원리도 필요하다. 만약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가 부딪치게 될 때에는 개인간의 가치충돌보다 더욱 민주적·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포인트 3 참조).

소수를 소외시킬 권리를 다수는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 다수의 힘으로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공동체는 소수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방법과 절차이며 이때 필요한 것은 구성원·집단간의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 토론의 문화이다. 또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합의된 운영원리는 갈등상황에서 훌륭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운영원리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으므로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개인의 가치와 자치공동체의 가치가 부딪칠 경우 **포인트 3**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체인 조직의 활동과정에 있어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개인가치와 집단가치의 충돌이다. 특히 자치조직일수록 이런 충돌현상은 그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소수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고와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1) 다수결은 민주적 방식인가?

우린 가치충돌이란 장면에서 흔히 다수결이란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그런데 다수결은 절대적인 민주적 방식인가? 조직의 차원에서 민주적 방식이란, 일부 구성원에 의한 나머지 개인들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특성은 모두가 동등하게 공유하는 의사결정권의 확보이다.

반면에 다수결은 토론, 수정, 절충 등의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장치일 뿐이다. 물론 다수결은 소수가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다수의 의지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소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다수결은 완벽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손쉬운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가치와 자치공동체의 가치가 부딪치는 경우에도 손쉬운 방법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지는 바로 구성원에게 달려 있다.

2) 만남과 대화, 그리고 토론으로 풀어가자.

민주주의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인간집단의 민주적 운영에는 모든 구성원들 간에 대화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참된 민주문화는 구성원간의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개인간의 가치충돌, 집단간의 가치충돌,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가치충돌은 오히려 만남과 대화 그리고 토론문화의 부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꾸 자꾸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토론을 해보자. 그래도 해결되기 어려운 주제는 의외로 많지 않다.

3) 운영원리를 명문화하자

대화와 토론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혹은 예전에도 토론했던 주제가 거듭 또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자치조직 내에 일정한 운영원리가 있다면 이런 갈등적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조직의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운영원리를 나름대로 준비해야 한다.

대체로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운영원리를 마련한다. 이런 운영원리는 회칙, 규정 혹은 지침서 등의 형식으로 명문화된다. 그래서 회칙이나 규정, 지침 등은 단순히 조직의 체계나 역할분담만을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운영원리를 명문화하기 위해 갖는 구성원들간의 합의절차이다. 원리나 원칙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배려와 적지 않은 시간과 열정이 투자되어야 한다. 특히 서로 일치되지 않는 의견조율을 합의점에 이르도록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원리결정에 있어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결국 청소년자치활동은 강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지향하
 되 개인과 소수집단의 가치도 존중되는 그 자체로 민주적 체험교육의 과정이다. 또 청소년자
 치활동과 그 운영은 청소년들의 자발성에 기초하는 점에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욕
 구와 저항의 에너지를 건강한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출구라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사
 회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책무성 역시 갖고 있다.



4.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청소년 자치활동에 있어 사업계획서 작성은 중요하다. 사업계획서는 작게는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문서를 의미하지만, 크게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자치조직이 지향
 하는 바를 선언하기도 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자치조직의 성격과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래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의 활동방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이자 단서이다.²⁾ 즉,
 사업계획서를 통해 자치조직 성격과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다. 그러므로, 자
 치기구의 성격·활동내용과 무관한 단위사업들을 구안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리
 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
 성원 모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많은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다만 여기서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원리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은 여러분이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다.

2) 사업계획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서와 단위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단위별 사업계획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서란, 대체로 일정 기간(분기별, 반년별, 연간)을 단위로 하여 자치활동의 방
 향성, 활동목표 등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보여주는 계획서이다. 반면에 단위별 사업계획서는 자치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행사중심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계획서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 작성원리

사업계획서가 자치조직 성격과 방향성을 대변하든 혹은 단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서이든 간에, 사업계획서는 분명한 전달력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창조성을 지녀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구성원에게, 외부적으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에게 사업계획서 하나만을 갖고도 “여러분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상황들을 꼼꼼하게 예상하고 검토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꼼꼼하지 않으면 실패의 경험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례적인 일 혹은 지겨운 일로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사업계획서를 하나 하나 작성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창조적인 작업이 적지 않은 사색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부터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밑그림이 바로 사업계획서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세밀하게 녹아 들어 있고 또 관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하나의 창조적인 작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나서 이외에 요구되는 사업계획서 작성원리들은 다음과 같다.³⁾

① 왜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먼저 답하자: 왜 자치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단위별 행사가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찬찬히 답을 해보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왜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논리적 타당성은 사업계획서 상에서 활동 목적과 목표, 배경, 기대효과 등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진다.

3) 여기서 나오는 사업계획서 작성원리 중에는 부분적으로 <NASW(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이필환 외 역(1999). 사회복지실천이론의 토대. 서울: 나눔의 집. p 347>의 책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서적이므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원리를 구안하는 데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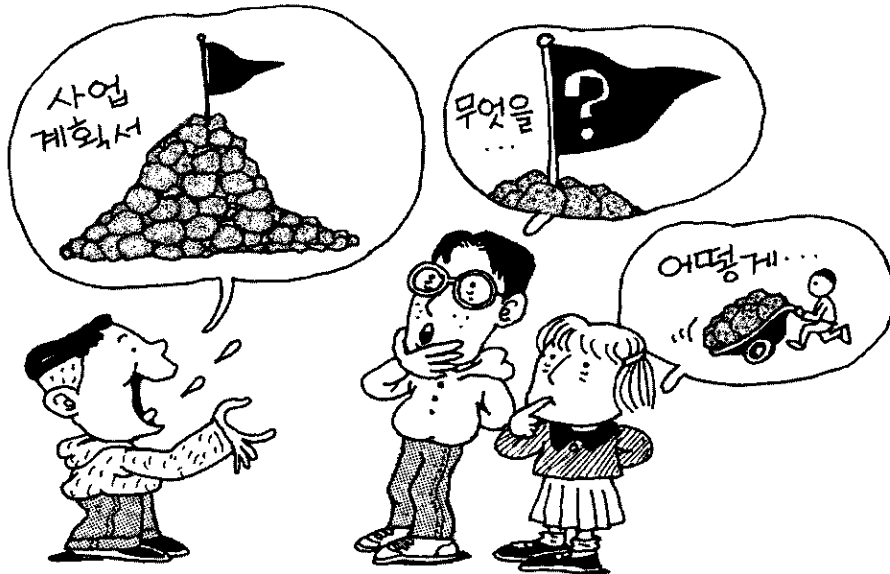
② 명료한 기술능력 : 구체적이고 분명한 문장으로 서술하자. 추상적일 수록 모호하다.

③ 논리적 기술능력 : 전달력을 위해 요구되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문장기술능력이 요구된다. 사업계획서는 깨끗하게 그리고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간을 지키자 : 대체로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마감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마감기간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⑤ 열정과 신념의 명시 : 제안한 활동목적과 접근방법에 대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과 진정한 신념을 명시하자.

⑥ 형식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 외부기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그기관이 요구하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은 여러분의 활동계획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여러분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은 크게 사업개요와 세부사업계획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개요와 세부사업계획서가 혼용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 사업개요 : 사업(활동)목적과 목표, 단위 행사의 경우 주제와 일정 · 장소, 자치기구 소개, 소요 예산액, 기대효과

▶ 세부 사업계획서 : 주제, 일정, 장소, 사업(활동)목적과 목표, 배경, 일정별 세부 활동계획, 홍보전략, 구체적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조직 및 역할분담 내역, 평가계획,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제시, 추수활동 계획 등

(1) 사업개요

먼저 사업개요는 세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작성한다. 반대로 세부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구안하기 위해 사업개요를 작성할 수도 있다.

사업개요는 특별한 형식이 없는 한 여러분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단위행사의 경우에는 주제를 설정하여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활동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과의 화합을 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나의 오늘, 우리의 내일’이라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사업개요에는 일정과 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여러분의 자치기구를 소개하고 전체 행사진행 시 소요되는 예산의 총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세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서술하면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설득력을 갖게 할 수 있다.

(2)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세밀한 검토와 배려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 일정, 장소, 활동목적과 목표와 같은 개요 사항을 한 번 더 기술하고 특히 활동목적

과 목표를 기술하기 전에 왜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배경’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또 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내용들을 서술하는데 가급적 시각적 효과가 높은 표와 그림, 그래픽 등을 통해 기술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예산 및 자원조달 계획,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내역, 평가계획,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추수활동 계획 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의 질적 측면을 읽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사안들로서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활동과 사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① 홍보전략 : 홍보전략은 여러분이 최대한 구안한 효과적이며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알리는 면대면(face to face) 홍보전략(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에 나가 직접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방법), 게시 홍보물(플래카드, 광고, 벽보, 포스터 등) 방법부터 최근 청소년 친구들의 접근이 용이한 매체들(인터넷배너광고, 웹진과 사이트게시판 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서면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관련 단체에 여러분의 협조요청을 문서화하여 홍보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여러분의 자치기구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또 가급적 공인 기관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가장 적절한 홍보전략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최대한 열심히 홍보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도 필요하다.

② 예산 및 필요재원의 조달 : 예산 및 필요재원의 조달계획은 사업을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예상하기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그러나 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미리 생각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의 규모를 차근차근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얼마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느냐 일 것이다. 아울러 하나 더 언급하자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 단체들을 찾아다니고 조언을 얻도록 한다.



③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 내역은 기획정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체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개인이 과업집단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모형부터 각 개인과 과업집단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이르는 기능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이다.

이때 사전에 어떤 과업집단이 필요하며, 어떻게 전체 조직과 연결시킬 것인지, 그리고 각 개인의 특성과 성격에 맞춰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결정과정에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과 양식도 먼저 생각해 본다. 예를 들면 단위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일정별 행사내용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하나의 표 양식으로 개발하여 실행단계에서 서로 교차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평가계획 : 평가계획은 활동결과가 사업목적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어떤 목적에 의해 평가하는지, 이때 최적의 평가도구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가설문지(혹은 평가지)와 같은 평가도구를 벌써 만들어 놓았다면, 부록의 형식으로 사업계획서 끝에 부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여러분의 준비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

⑤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은 사업내용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며 지역사회에 지지할 만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며, 또 사업결과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는 단순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데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사업내용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청소년권리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한다고 하면, 인권전문가나 소외경험 청소년을 섭외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또 딱딱한 책걸상이 있는 교실을 떠나 박물관의 야외강당을 빌려 행사를 치를 수 있다면 그 분위기는 매우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이 여러분의 사업에 결합하게 되면,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사회로부터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을 유지하면 여러분의 사업활동이 미치는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여러분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해 주는 사람과 기관의 도움은 단순히 참여에 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연계·협력이 활성화될 수록 여러분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그만큼의 지원이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협력기술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⑥ 추수활동(follow up) : 추수활동 계획은 단위 사업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획할 때 한 단계 ‘업 그레이트’ 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장기적 안목과 의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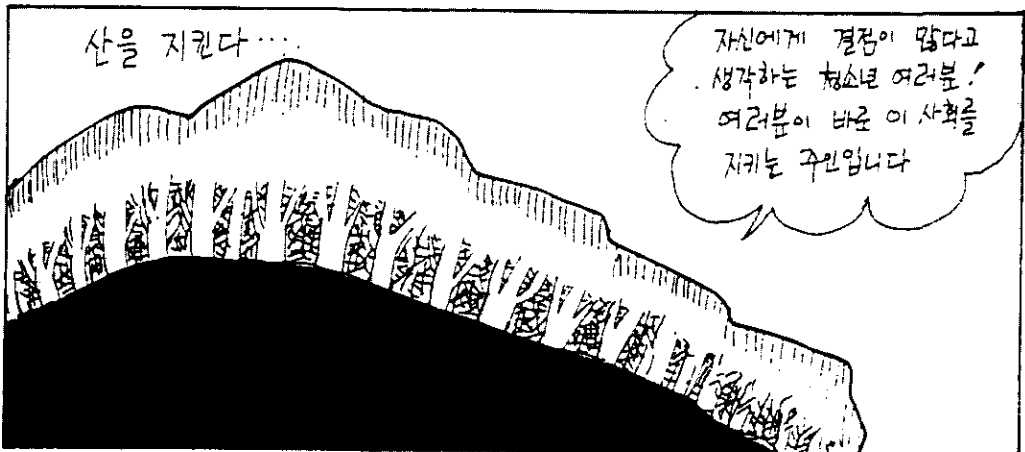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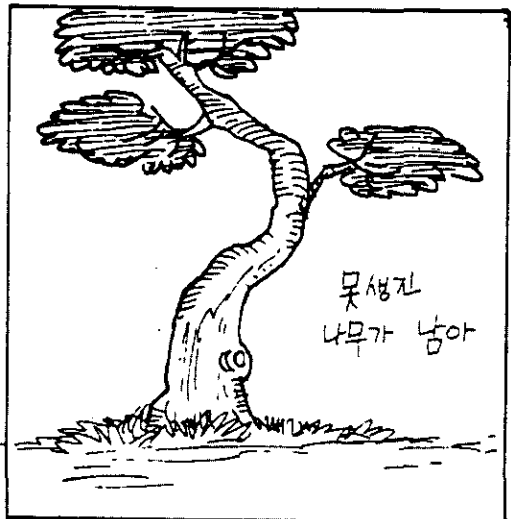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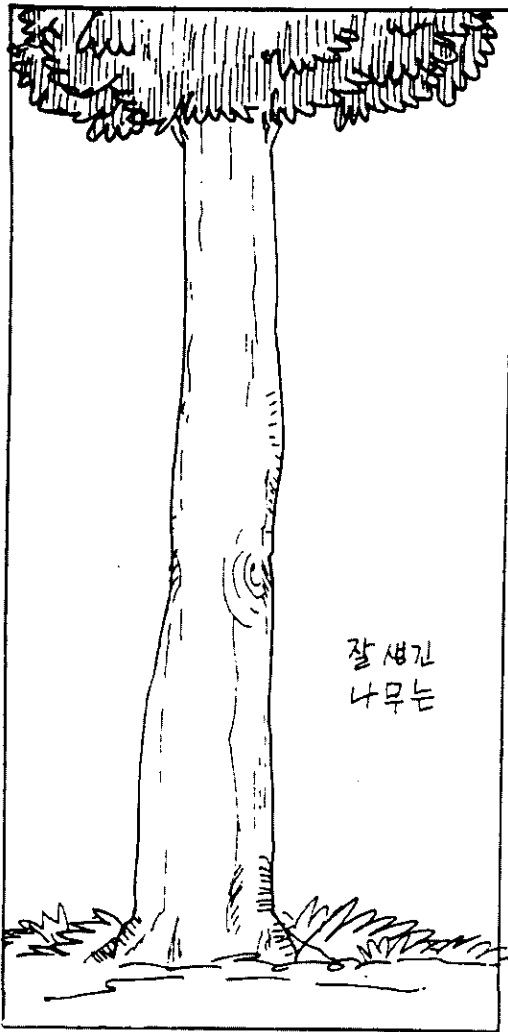
단지 하나의 사업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 행사는 있지만 활동은 없다”는 평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이지 못한 일회적 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여러분이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목적과 내용을 갖는 게 낫다. 그렇다면 추수활동은 빠질 수 없는 또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추수활동에는 단위 행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구성원들의 평가토론일정을 구체화시키고, 만약 특별한 교육일정이 요구되면 이것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참고문헌

- Kaufman, R.(1998). *Strategic Thinking: A Guide to Identifying and Solving Problems*. Arlington, VA :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ASTD).
- Muchinski, P. M.(2000). *Psychology Applied to Work : 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유용태 역(2000).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 NASW(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이필환 외 역(1999). 사회복지실천이론의 토대. 서울 : 나눔의 집.

못생긴 나무





제3장 지역사회의 청소년자원과 활용

1.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제란

우리 나라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리에 관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행정기구는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자치단체는 다시 특별시, 광역시·도와 시·군·구로 나뉜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고, 시는 도의 밑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밑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의 밑에 둔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그 중 청소년과 관련된 일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이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설치와 운영, 도서관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와 관리,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등이 포함된다.

자치단체는 종류별로 그 맡는 일이 구분되는데, 시·도는 행정처리 결과가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넓은 사무 등을 맡고, 시·군 및 자치구는 법령으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일을 맡는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자치단체의 주인은 주민이다. 여기에서 주민은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다. 주민은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뽑을 수 있고, 그 대신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2) 청소년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처음 생긴 것은 1988년이다.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생기면서 시·도에는 청소년과, 시·군·구에는 청소년계가 만들어졌다. 이후, 자치단체에서 청소년관련 부서의 소속은 조금씩 달라졌는데, 최근에는 시·도의 경우 대체로 문화관광국에 속한다.

서울특별시는 문화관광국 밑에 문화과, 문화재과,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월드킵기확담단장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는 모두 14가지인데, 그중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10가지이다.

1. 청소년 건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2.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6. 근로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관련 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정보지 발간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사업관 및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에는 문화관광국 밑에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가 있고, 체육청소년과 밑에 체육지원팀, 생활체육팀, 청소년육성팀, 청소년보호팀이 있다. 청소년 담당 부서는 청소년육성팀과 청소년보호팀이다.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업무는 체육업무와 함께 짝 지워지거나 사회복지업무와 함께 묶여진다. 광주광역시는 과거 시민복지국 밑에 청소년과가 있고, 그 밑에 청소년육성계와 청소년보호계가 있었다. 청소년과가 체육과로 통합되어서 체육청소년과가 되었고, '계'는 '팀'으로 바뀐 것이다.

시·군·구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체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속해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에 생활복지국 밑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재활용과, 환경위생과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등과 함께 청소년을 담당한다. 그중 청소년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시설건립 운영 및 단체 법인에 관한 사항
2.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어려운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 지원
4. 아동위원협의회 및 청소년위원회 운영
5. 청소년선도 및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사항
6. 청소년 수련활동 및 어울마당 운영
7.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8.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및 관리
9. 기타 청소년 보호(교육홍보 등) 관련사항

3) 주요 청소년사업

자치단체가 하는 청소년사업은 주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장려하는 사업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비행청소년이나 탈선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의욕적으로 설치하여 청소년이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보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는 것,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도 중요한 사업이다.

한편, 청소년이 유해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습관성 약물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매체물을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보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에 의한 청소년의 성매수인 원조교제를 금지하기 위한 단속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19세미만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자치단체가 하는 청소년사업은 시·도나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직접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 시민운동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과 함께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에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을 맡기고, 필요한 예산을 국고와 지방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생활권 수련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여전히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련시설이 청소년의 욕구를 아직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를 강조하면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게 보다 세분된 보호활동이 필요하다.

4) 자치단체 활용하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시·도청과 시·군·구청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청소년은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 이유는 주민 중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국민만이 주민의 대접을 받았고, 20세 미만은 성인인 주민이 그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 ‘민법’과 ‘관습’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규범은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하거나 그 대표자가 할 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기구, 공무원, 공공시설물, 예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치단체가 하는 청소년사업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청소년이 자치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의 대표조직을 구성한다.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이나 주요한 청소년사업의 결정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은 빠져있다.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모으고자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도 청소년대표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처럼 모든 자치단체는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



회를 만들고 주요 청소년사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청소년대표의 의견을 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이 학생회연합회, 동아리연합회 등 자치조직을 자치단체 단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관심을 가진 청소년 이슈를 함께 토론하는 ‘청소년포럼’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 자치단체의 청소년담당자를 초대한다. 예를 들어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시·도청 혹은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을 토론자로 초청한다. 나아가서, 청소년의 달 행사위원회에 청소년대표가 참여하여 그 행사가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다.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면, 시·도청 혹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의견을 써서, 계획을 짤 때 참고하도록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청소년사업 중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청소년단체 등에 맡기는 일이 많으므로 청소년은 이 사업에 참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수련시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서’에 의견을 쓴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청소년사업에 대한 ‘청소년시정(구정) 감시단’을 운영한다.

넷째,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청소년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시청에서 어린이를 위하여 시청홈페이지에 ‘어린이홈페이지’란 공간을 만들었듯이,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만한

자치단체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이 관심을 갖는 지역뉴스 등을 게시하며, 청소년이 참여하여 청소년정책을 결정하고 청소년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은 가까운 장래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국토방위와 납세의무를 지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연구회'를 동아리활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공보관실, 문화원과 공공도서관 등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단체의 역사, 인구와 산업, 지역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를 얻고, 청소년의 눈으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운영한다. 자치단체는 이 연구회에 모임공간을 제공하고, 활동사업비를 지원하며, 그 연구결과를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방의회

1) 지방의회란

시·도와 시·군·구는 주민의 여론을 모으는 대표기구로서 지방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데, 법으로 20세 이상의 주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주요 사무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여기에서 주요 사무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등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다.



2) 지방의회의 위원회와 하는 일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갖는다. 정례회는 주로 결산의 승인과 예산의 심의·확정 등 지방의회의 주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지방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위원회의 명칭과 하는 일은 지방의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특별시의회에는 운영위원회 등 9개의 상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 중 청소년과 관련이 높은 위원회는 문화교육위원회이다. 문화교육위원회가 하는 일은 공보관, 문화관광국, 국제협력담당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시립대학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중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의회는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청소년 관련 사항은 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다.

3) 지방의회 활용하기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리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의원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지방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1/20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은 결국 의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대신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관련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원회 방청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청소년단체의 지원 등 청소년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을 심의할 때 집단으로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의회연구회' 등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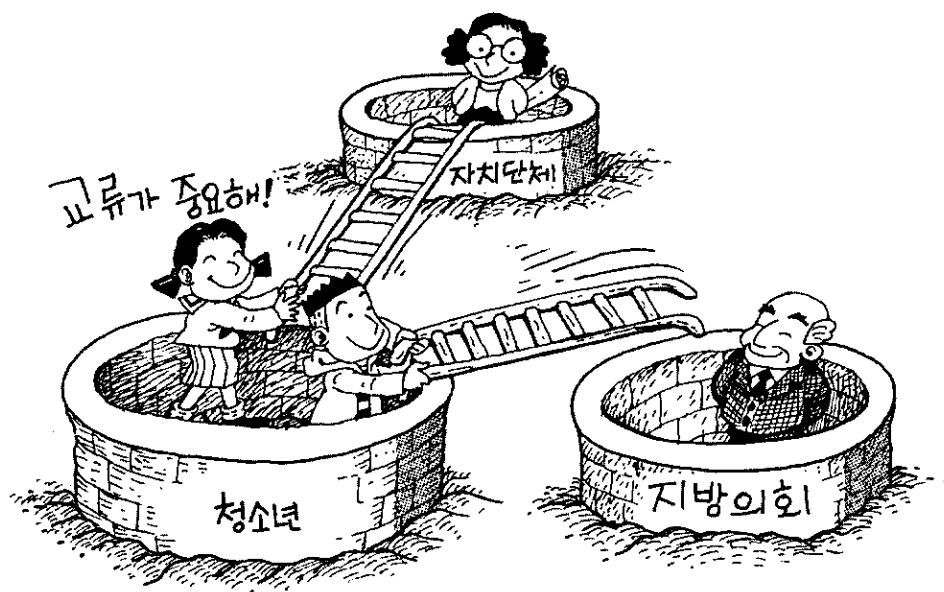
셋째, 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의원과 함께 모의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처럼, 청소년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서 '청소년의회'를 만들고, 매년 1회 이상씩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원을 청중으로 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다. 청소년은 평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년사이버의회'를 두어서 주로 인터

넷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안건을 심의하며, 투표하도록 한다.

넷째, 홈페이지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쓸 수 있다.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지방의회나 특정 의원에게 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두고 있고, 의원소개란에서 각 의원별로 이메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할 때, 청소년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외국과 교류할 때 반드시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키거나, 청소년 관련 사업을 기획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은 현재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주민과 동등하게 지방의회와 의원에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은 자신의 부모인 주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스스로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빠르면 다음 선거 혹은 그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청소년의회'나 '청소년사이버의회' 혹은 '청소년의회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

1) 청소년단체의 종류와 사업

우리 나라 청소년단체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만도 60여개가 넘는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회원간의 친목도모, 수련활동, 사회교육, 지도자 연수,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중에서 전국 규모의 단체는 시·도에 지역단체를 두고, 시·군·구에 연락사무소나 담당자를 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사 등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단위조직을 두어서 회원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단위로 청소년단체가 조직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지도자로 일하고, 지역단위로 단체가 조직된 경우에는 직원이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단체를 움직이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스카우트와 같이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가 많고, 각종 종교조직의 학생회나 청소년회와 같이 종교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무등청소년회와 같이 특정 지역에 회원을 둔 단체가 많이 출현하였다. 단체활동도 과거에는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수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던 것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만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있다. 청소년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청소년단체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청소년단체의 큰 특징이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는 '중고등학생연합'과 같은 자주적인 청소년단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사업

국가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폭 설치하였다. 수련시설은 크게 자연권시설과 생활권시설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나뉜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시설은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히 시설과 설비 또는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련거리와 이를 기획·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마치 학교가 교실과 책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 등을 모두 말하는 것과 같다.

수련시설의 사업은 그 종류에 따라서 특징을 달리 하고 있는데, 생활권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가선용과 휴식 등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방과후나 주말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 저렴한 비용으로 배움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자연권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학교나 생활주변에서 경험하기 힘든 자연체험활동 등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여행하는 청소년에게 쉼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여행자의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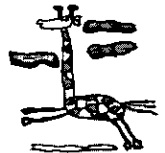
3) 청소년단체·시설 활용하기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비해, 청소년에게 매우 친근한 곳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청소년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청소년단체는 매년 초에 새 회원을 모집하고, 한번 가입한 사람은 회비만 내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는 교사, 학부모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청소년을 지도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은 청소년단체나 수련시설이 개설한 프로그램에 짧게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나 시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운동기술을 가르치거나 동아리활동을 조직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입한 것만으로 단체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단체는 회원확보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과 친교 등을 위해서 이러한 단체와 시설을 이용하는 서로 돕는 관계이다.

셋째, 청소년은 자주적으로 청소년단체를 만들 수 있다. 기존 청소년단체가 성인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면, 자주적인 단체는 청소년과 청년이 중심이 된 단체이다. '중고등학생연합'과 같이 학생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 중고등학교를 그만 둔 탈학교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성인들로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넷째, 청소년은 기존의 청소년시설의 성격을 바꾸고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을 창조할 수 있다. 과거 근로청소년회관이었던 공간을 하자센터로 바꾼 서울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중심으로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욕구가 다양하게 되고, 특히 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생활양식을 체득하기 위하여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시도이다.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대상자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단체의 회원 혹은 수련시설의 참가자가 아닌 청소년도 단체나 시설의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최근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많은 프로그램이 회원이나 프로그램참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계획단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거나 청소년회원을 모집하여 활동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탐사와 환경캠프 등을 조직하여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고 있다. 청소년은 이러한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대니서는 12살에 '지구 2000(Earth 2000)'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4.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1) 학교의 종류

지역사회에서 학교만큼 청소년에게 친숙한 공간도 없다. 학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청소년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다.

학교는 누가 설립·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세운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개인이 만든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각급 학교는 국가가 정한 법령에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을 가르친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학교

가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장학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 시·군·구에는 교육청을 두고 있다.

2) 학교에서의 청소년자치활동

학생은 학교에서 읽고 쓰고 셈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학생들끼리 자치활동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군사부일체’이란 관습 때문에 학생은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학생이 학습의 주체라는 인식을 별로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교내외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규제되고, 학생의 의사표현이나 집회 등은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지만, 체벌과 같은 반인권적인 징계가 흔히 이루어져 왔다.

이때문에 학생은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방과후나 주말과 같이 자유시간이 주어질 경우 학교에서 벗어나서 학교주변이나 시내 중심가의 유흥오락 공간을 이용하길 더 좋아한다. 현재, 학교 내에서 학생회, 동아리, 특기적성 교육 등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있지만, 형식적인 회의나 단편적인 교육에 그치고 실질적인 자치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3) 학교 활용하기

학교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증설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수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와 교육기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그리고 지역사회인사만 있고 학생대표는 빠져있다. 학교운

영위위원회는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데(사립학교), 학습의 주체인 학생은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루빨리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학생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학생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한다. 학교에는 교실뿐만 아니라 도서관, 과학실, 체육관 등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가 상당히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 도서는 별로 없고 단지 숙제와 시험공부를 하기 위한 열람실만 있거나, 체육관은 있지만 대표선수만 이용한다면 유익한 학습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학생의 평가가 학기단위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보고되어서 학교운영백서 등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내에 매점과 식당, 체육관, 동아리활동 공간, 공연장 등 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가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방과후에 교실을 이용하거나 발표회나 공연을 할 공간이 없어서 학교주변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교육예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넷째, 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일부 학교 법인이 돈이 있어서 수영장이나 공연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생들만 이용하면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많은 대학교가 주민들에게 학습공간을 개방하여 수익을 얻듯이, 초중고등학교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연대해서 학교의 공간과 설비를 이용하고, 교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촉구하는 사회운동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교육예산의 할당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을 정할 때 학생 연대조직이 기여한 바 크다.

5. 기타 지역사회 기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공동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 그리고 백화점, 극장 등의 상업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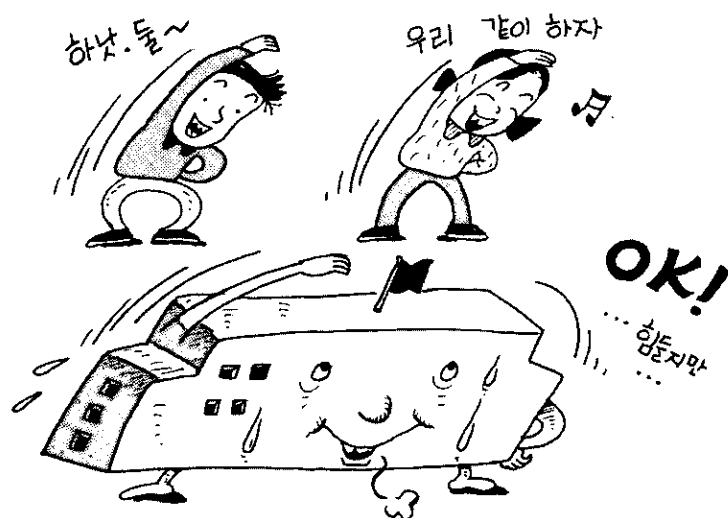


1) 공공기관 활용하기

지방자치단체에는 본청과 의회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직속기관으로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학교, 소방서가 있고, 사업소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여성발전센터 등 그 기관수가 19개소에 이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구의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는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경찰서, 파출소와 지서), 지방병무청, 지방노동청, 지방채신청(우체국) 등이 있다. 아울러,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공익성이 강한 기관은 전화국, 전력공사 지사, 농업협동조합, 언론기관, 금융기관 등 무수히 많다.

실제로 선진 외국에서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작은 규모의 센터를 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종교기관이 쓰고 있는 공간의 일부나 썼던 건물을 개보수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편하였는데, 인구의 감소로 폐쇄한 동사무소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개발할 수 있다. 건물을 수리하고 내부 설비를 갖추는 데, 소방서는 안전검사를 하여 소화기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소는 구급약을 제공하며, 언론기관은 각종 행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어떤 공공기관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이러한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지역사회에는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문화의 집, 시·군·구 민회관 등이 있는데, 이용자가 적거나 시설과 설비는 있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객석이 1,000석 이상인 종합공연장에 관객이 300명이 그치는 경우보다는 무료관객이지만 800명 이상이 있는 것이 공연장의 분위기를 훨씬 좋게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저렴한 입장권을 팔뿐만 아니라, 공연시작 20분전에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초대권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종교기관 활용하기

청소년이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중의 하나는 교회, 성당, 사찰, 교당 등 종교기관이다. 많은 종교기관은 예배를 보는 공간에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다양한 집회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문화관 등을 별도로 지어서 각종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학생회 활동이 대표적인 일상활동이고, 여름수련활동 등은 체험학습의 장이다. 종교기관은 해당 종교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절기별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특정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에서 장려하는 각종 선교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체험학습이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자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마을잔치나 운동회, 바자회 등을 실시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교회 등 종교기관이 청소년회관의 건립 등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기관도 예배공간을 거대하게 짓는 것보다 신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확보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부방, 도서관, 상담실, 야간학교, 공연장 등으로 개방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그러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정주부와 노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3) 상업기관 활용하기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라면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 PC방, 노래방, 분식집, 문방구, 구멍가게 등 상업기관이다. 청소년단체와 시설 등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먼 거리에 있고 시간을 맞추어서 집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상업기관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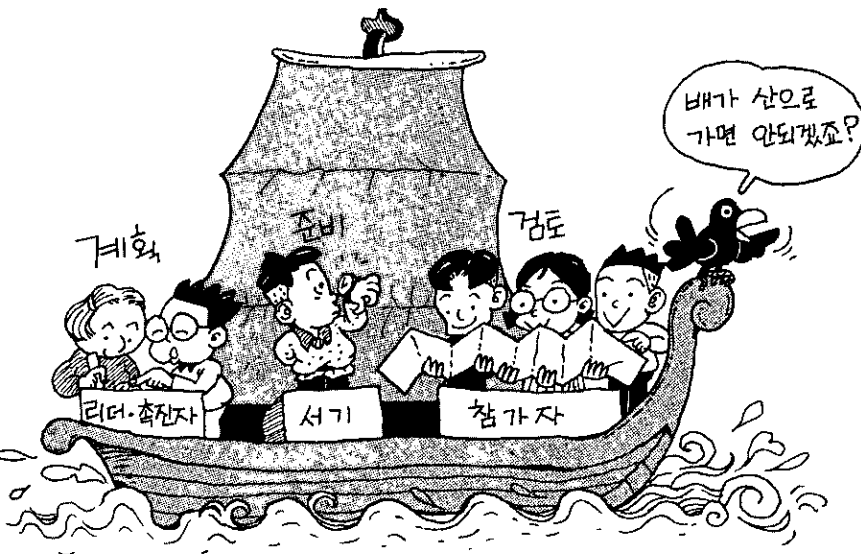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청소년이 이러한 상업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상업기관이 소규모이고 그 주인이 생계를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준은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주머니를 유혹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학교주변과 시내 중심가에서 볼 수 있는 상업시설이 대부분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취급하는 가게라는 점에서 볼 때, 상업기관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이 중요한 소비집단이 되면서 상업기관에서도 청소년에게 호감을 주는 판매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컨대, 이동통신회사에서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맞는 서비스상품을 기획하거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 청소년의 활동에 상품을 협찬하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상업기관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돈을 버는데 있지만, 어차피 각종 행사를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할 때 상업기관이 협찬을 해준다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버스요금과 극장요금의 할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청소년이 기획하는 행사에 장소의 제공, 물품과 서비스의 협찬을 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어서 상업기관의 협찬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우리 시대의 주요한 소비계층인 청소년이 단결해서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을 집단적으로 구매하거나 청소년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주로 파는 회사가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의 제공, 청소년행사의 협찬, 청소년이 기획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더 많이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자치활동





제4장 자치활동 능력과 사회기술

1. 회의 진행법

청소년자치활동을 하게 되면 한 두 번의 회의는 필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 회의가 친목회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장이 되어 시간만 낭비했다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참석한 청소년들 모두가 동의하고 준수하는 체계적인 구조가 있다면 소모적인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 회의준비

(1) 회의 전에 구성원들간의 역할을 분담한다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회장, 임원, 서기, 회원으로 구분된다.

회장은 회의계획을 수립하고, 회의 일정을 준비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제시한다. 각 임원들은 회의 일정과 이전 회의에서 작성한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사항을 마련한다. 또한 회의진행에 관해서는 회장과 함께 작업한다. 서기는 구성원의 의견을 편집하거나 부연설명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자료를 준비한다. 회원은 회의 일정과 이전 회의내용 그리고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사전에 참석여부를 회장에게 알려준다.

(2)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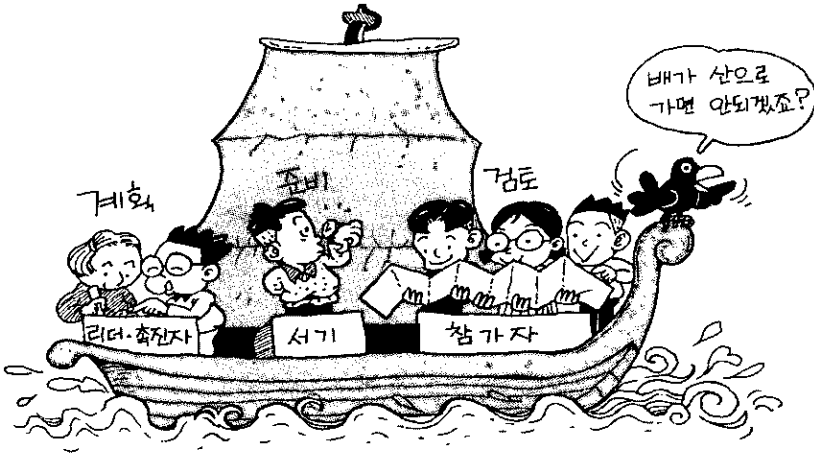
먼저, 회의목적을 정한다. “이 회의를 통해 달성하게 될 바람직한 결과는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고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작성해 본다. 이어서, 회의일정 즉, 회의의 시기, 장소, 준비내용 등을 정한다. 특히 회의의 장소는 회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가규모에 적합한 장소로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 것이 좋다. (「회의 의사일정양식」 참조)

(3) 회의를 통지한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통지한다. 회의 통지를 한 뒤 가능하면 회의 전날에 다시 한번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보내 준다.

(4)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 준비 사항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필기도구, 회의록, 시청각 도구, 회의자료 인쇄물, 다과 등 회의와 관련된 주변 요소를 확인한다.



2) 회의진행

회의진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서기나 총무가 참석 회원수를 확인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참석한 회원수가 정족수를 넘으면, 회장은 “지금부터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
3. 서기는 지난 시간의 회의록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발표한다.
4.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지난 회의때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실천결과를 반성한다.
5. 각 분과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발표한다.
6. 회장은 회의에서 토론할 안건을 제안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한다.
7. 안건과 관련된 동의를 제출하여 의제를 채택한다.
8. 자유토론 과정을 통해 결정사항과 실천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찬반토론,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
9. 회장은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발표한다.
10. 회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3) 회의 평가

「회의평가 양식」을 참조하여 회의참가자들이 이 회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 본다. 얼마나 자주 회의를 평가할 것인지는 회장이 잘 판단해야 한다. 너무 자주 평가하면 구성원들이 평가서를 매번 완벽하게 작성하는데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성공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조건

(1) 회의를 정시에 개최한다

회원들의 불만 중의 하나는 늦게 참석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일이다. 청소년자치활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습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런 시간낭비에 대해 불평을 한다. 따라서 회장은 회의를 예정대로 시작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만약 회장이 회의를 예정대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정시에 참석할 것이다.

(2) 회원들의 역할을 명료화한다

회장은 회의에서 집단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과 책임에 대해 검토하고, 이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기본규칙과 지침을 설정한다

기본 규칙이 없다면 회의할 때 의견충돌이 조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규칙을 정하고 이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른 참가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자”, “해결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좋다” 등이 그것이다.

(4)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본 회의에서 논의, 결정하고자 했던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5) 되도록 참가 구성원들 모두가 한 번 이상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참가자들은 말이 없거나 소극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치있는 의견이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참가시키는 것이 좋다

2. 문제해결 방법

대부분의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비디오게임이나 대중음악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 중에는 지역문제나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어떤 사람도 청소년보다 청소년자신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 이제,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보자. 이를 보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1) 다양한 문제 공유하기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자.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것 또는 향상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있는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는가? 붕괴된 빌딩이나 집없는 사람,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청소년이 사회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역사회나 청소년 관련 문제들을 제안하고 토의해 보자. 만약 그것이 수월하지 않다면 구성원을 2~4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별로 한 가지씩의 문제점을 토론했 후 전체적으로 모여 그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을 취해 보자. 이때 「문제파악과 분석양식」을 활용해 보면 좋다.

2) 하나의 문제 선택하기

문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투표를 통해 하나의 문제를 선택한다. 만약 연구 조사할 문제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의 1단계를 다시 진행하면 된다.

3) 정보수집하기

문제를 선택했으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보라도 보다 유용한 정보들이 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지, 어느 곳에서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토의를 마친 후에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정보를 수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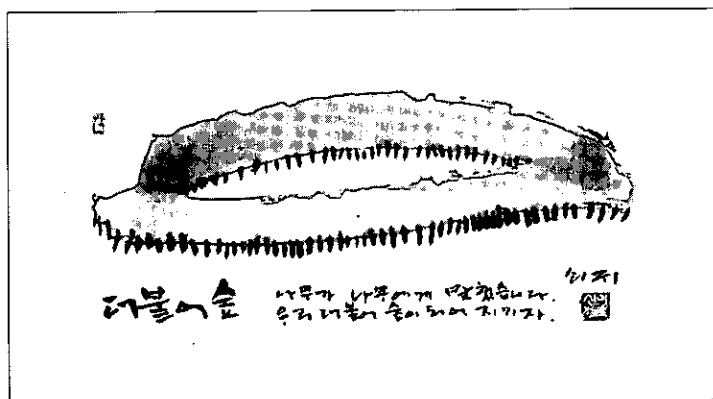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읽어 보는 것도 정보를 찾는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 여러분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된 단체에 전화를 해보거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도 있다.

4)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하나를 선택하기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고 각 해결방안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한다. 왜냐면 때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최상의 것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잠재적 해결책들을 적어본 후 가장 실현 가능해 보이는 것이나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해결책을 하나 선택한다. 이외에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되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그것의 문제점 및 한계는 없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도와줄 사람 찾기

여러분의 해결책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문제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가나 비영리단체에 이메일을 보낸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6)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기

의외로 좋은 해결책은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과 조직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가능한 한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반대자들을 '나쁜 사람' 보다는 '다른 의견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보는 편이 더 낫다.

7) 하고 있는 일 홍보하기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신문기자는 청소년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TV나 라디오 방송국은 가치있는 사업을 위해 방송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다. 교육이나 청소년문제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 본다. 이때 작은 지역신문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는 교회전단지도 말이다. 어느 것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지 말자.

8) 돈을 모으기

여러분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린 후, 그 계획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계획들이 이 단계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9)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기기

이제,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제안할 정책을 학교나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작성해 보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긴다. 이때 연설할 장소, 편지 쓸 대상 그리고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할 대상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좋다.

10) 평가와 반성하기

이제 여러분의 계획과 그것의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할 때이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고자 노력했는가? 여러분의 해결책은 괜찮았는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취했는가? 이처럼 당신의 경험을 기술하거나 그리거나 각색해 보자.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의 책임이다. 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1. 문제를 기술한다.
2. 조사방법 및 과정을 기술한다.
3. 문제해결책을 기술한다.
4.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서를 기술한다.
5.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을 기술한다.
6.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기술한다.
7. 지금까지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반성한다.
8. 수집한 자료를 첨부한다. 수집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지 말고 그 중 가장 좋은 자료를 골라 첨부한다.
9.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포기하지 말자 !!!

여러분의 주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계속 진행시켜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제거한다는 것은 아니다.
산은 밑에서 보면 가장 크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라.

3. 사회행동의 기술

청소년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의 필요성을 한 두 번은 느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나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곳을 찾아 목록 만들기

1. 도서관 : 학교, 정부기관 그리고 대학의 도서관에는 여러분이 연구 조사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다. 이때 「출판물로부터 얻은 자료 정리양식」을 이용해 정리해 두면 좋다.
2. 신문사 : 여러 신문사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자들은 청소년 관련 문제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나 사진을 신문사나 기자에게서 얻을 수 있다.
3. 교수와 학자 : 여러분이 조사하려는 문제점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사, 교수, 연구자가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이와 관련된 학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
4. 변호사 또는 판사 :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사회단체 :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많다.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회단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 의원사무소 :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공공 정책을 입안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사무실에는 시민들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으며 그곳에 조사하려는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면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이들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7. 행정기관 : 여러분이 조사하기로 선택한 문제를 공무원이 다루고 있을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정부대책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8. 인터넷 : 인터넷을 이용하면 앞에서 언급한 곳 이외의 다양한 곳을 찾을 수 있다. 가정



이나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면 지역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2) 자료조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 전화 요령

1.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의 이름, 학년, 그리고 학교 또는 소속단체를 말한다. 소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여러분은 더 나은 서비스를 얻을지도 모른다.
2.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서의 누구와 통화를 해야하는지 모른다면,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여러분의 목적을 설명해 본다. 그러면 적당한 부서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3. 여러분이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리에 없다면 언제 통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후 그 시간에 다시 전화한다. 또는 여러분의 이름, 학년, 학교 및 단체명, 전화번호, 그리고 여러분이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남겨라. 그러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응답전화를 할 것이다.
4. 응답전화가 오지 않으면 다시 전화한다.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되 항상 예의는 지켜야 한다. 결코 무례하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여러분의 목적에 해가 될 뿐이다.
5. 여러분이 접촉하고자 했던 사람이 응답 전화를 했을 때, 그에게 여러분의 이름, 학년 그리고 학교 또는 단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후, 여러분이 전화했던 목적을 이야기한다.
6. 상대방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적어놓는다. 상대방이 너무 빨리 적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말해 줄 것을 요청한다.
7.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 직위,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물어본다. 또한 여러분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긴다. 그것은 그 사람과 여러분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8. 전화를 끊을 때는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시한다.

(2) 편지 쓰는 요령



신문사나 잡지사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는 법

1. 여러분이 보내기로 계획한 신문 또는 잡지의 인쇄규칙을 알아본다.
2. 추가적 효과를 위해 학교나 소속단체의 편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학교 편지지가 없다면 되도록이면 흰색 종이를 사용한다.
3. 가능한 한 편지를 컴퓨터상에서 쓰되 그것이 쉽지 않으면 자필로 써도 좋다.
4. 잡지사나 신문사는 익명의 편지를 기사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소와 서명을 분명히 써야 한다.
5. 실제 기사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간결하고 분명하게 편지를 쓴다.
6. 여러분의 주제가 현재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편지를 쓰면 좋다.
7. 편지를 쓰면서 증거 없이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8. 여러분의 해결책과 그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한다.
9. 신문사마다 동일한 편지를 보내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친구로부터 형식적 편지를 받는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신문사도 역시 그렇다.
10.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교정을 본다. 편지는 우편뿐만 아니라 팩스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할 때 이것만은 주의!

- **사무실, 도서관 등의 장소방문** :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단체의 사무실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기보다는 혼자나 2~3명이 가는 것이 적당하다.
- **전화걸기** : 전화를 걸어 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한 명이 이를 맡아서 해야 한다. 또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기록을 잘 하여야 한다. 이때 「편지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자료 정리 양식」을 이용하면 좋다.
- **인터뷰 하기** : 인터뷰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한 명이 전화를 한 후, 개인 또는 2~3명이 사무실이나 행정담당자를 방문하여 인터뷰한다. 이때 「편지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자료 정리 양식」을 이용하면 좋다.
- **편지쓰기** :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각각의 사무실이나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답장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확실히 적어야 한다. 우편, 팩스, 이메일(emai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법

1. 공무원들이 편지를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편지를 보낸 후 1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한다
2. 여러분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공무원이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첫 문장에 여러분의 목적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특정 법안을 왜 반대하거나 지지하는지를 써라.
4. 공무원에게 쓰는 편지는 간결할수록 좋기 때문에 편지에는 한가지 문제만을 적는다.
5. 예절 바르게 쓴다. 결코 무례하게 편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
6. 가능하다면 호의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만이나 제안에 대해 귀를 잘 기울일 것이다.
7.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대표 의원이외에 다른 의원에게 편지를 쓰고자 한다면 지역구의원에게 보냈던 편지의 사본을 보내는 것이 좋다.



(3) 인터뷰 요령

1. 편지나 이메일, 전화로 인터뷰 약속을 정한다.
2. 인터뷰 전, 질문할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둔다. 이때 인터뷰시 즉각적인 질문과 대답을 위해 약간의 시간적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3. 인터뷰하는 동안 작은 노트에 대답을 적는다. 이때 여러분이 작성한 질문지에 굳이 그것을 적지 말고 질문에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매겨가면서 노트에 자유롭게 기록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 날짜, 인터뷰 시작 시간과 끝낸 시간을 기록해 둔다.
4. 여러분이 인터뷰하고자 했던 시각에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5. 여러분이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 녹음기를 사용하더라도 중요한 인터뷰 내용은 간략하게 적어 놓는 것이 좋다.
6. 여러분이 사진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진을 찍는 것도 좋다. 물론 먼저 양해를 구한다.
7. 상대방이 여러분의 질문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길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안에서도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의 질문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8. 인터뷰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인터뷰는 경청이 기본임을 명심하자.
 9.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확인한다. 그것이 상대방 말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10. 인터뷰 대상자가 너무 빨리 말해 알아듣지 못했으면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해줄 것을 요청한다.
 11. 인터뷰 후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지 물어 본다.
 12.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한 후, 그것을 동료들과 공유한다.
- ☞ (「인터뷰 양식」 참조)

(4) 설문조사 요령

1. 외부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우선은 부모나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2. 질문지가 너무 길면 성의없이 해 주거나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5쪽을 넘기지 않도록 만든다.
3. 설문에 응한 사람 중에는 여러분의 질문에 도전하거나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때 침착하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여러분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
4. 설문조사가 끝났으면 결과를 차트나 표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정리한다.
5. 결과를 관련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알려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의견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1) 연설 요령

1.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적합한 청중을 선택한다.
2. 긴 연설보다 짧은 연설이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간결하게 한다(5분 정도).
3. 연설에 도움이 되는 키포인트를 원고 한 구석에 특별하게 표시해 둔다.
4. 연설을 하기 전,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한다.
5. 연설할 때는 청중을 보면서 한다.

6. 연설하는 동안 소음으로 방해를 받는다면 잠깐 중단한 후, 조용해지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7. 여러분이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마이크의 정확한 지점에 대고 크게 천천히 말한다.
8. 사람들이 연설에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9. 연설 뒤에는 질문과 대답을 위한 시간을 남겨 둔다.
10. 한 페이지 정도의 인쇄물을 준비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2) 서명 받기

1. 서명서의 제목을 정한다(예 : 교통안전을 위한 서명서).
2. 여러분의 서명서를 보낼 공무원이나 기관을 정한다.
3.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도록 서명서 위쪽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쓴다.
4. 만나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대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서명할 것이다.
5. 서명해 주기를 요청한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수록 침착하게 예의를 지키고 결코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한다.
6. 여러분이 서명받는 것을 복사해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나중에 원본을 잊어버렸을 때 서명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서명서 양식」 참조)

(3) 사업계획서(프로포절) 만들기

1. 사업계획서의 제목을 정한다.
2. 그것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를 정한다.
3. 여러분의 단체를 밝힌다.
4. 날짜를 기입한다.
5. 여러분이 조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6. 여러분의 행동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다.
7.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서비스 등을 언급한다.
8. 모금활동계획을 포함해 예산을 세운다.

9. 계획을 언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는지에 관한 일정표를 기술한다.
10.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조언을 받는다.
11.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면 간략한 설명 편지를 쓰는 것이 좋다.

(4) 보도자료 만드는 요령

1. 방송관계자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담은 보도자료를 보낸다. 내용을 기사화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발송 시기를 정한다.
2. 보도자료 맨 위에 기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한 전화번호나 여러분이 주로 접촉한 사람의 이름 등을 적어 놓는다.
3. 보도자료에는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4. 여러분의 보도자료를 인상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인용부호나 유머, 또는 특별한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여러분의 보도자료가 전문가의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으나 그것을 유형화하거나 컴퓨터상에서 작성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6. 보도자료를 보내고 나서는 여러분의 사건을 기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며칠 간격으로 전화를 한다.
7. 또한 기자와의 인터뷰에 대비해 연습을 해 두자. 기자들은 짜여진 답변을 좋아하지 않지만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두면 실제 인터뷰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8. 여러분의 사건을 취재할 기자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여러분이 또 다른 활동을 계획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
9. 여러분의 사건이 끝났을 때, 찾아온 기자 모두에게 감사의 글을 보낸다.

☞ (「보도자료 양식」 참조)





4) 국회의원에게 로비활동 하기

(1) 성공적인 로비활동을 위한 요령

로비활동이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종의 설득 기술이다. 성공적인 로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이 필요하다.

1.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잘 조사한다.
2. 국회의원이 여러분의 의견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회기 이전에 로비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3. 여러분의 사건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는다. 그 후원자는 로비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나 여러분의 사건을 믿어주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좋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연합해라.
4. 여러분은 반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 만약 여러분이 공기정화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되기를 원하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의 법률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설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문제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고 여러분의 정책대안에 그들의 관점을 포함시킨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5. 법률에 대해 연구하는 법사위(법안심사소위)의 규칙과 국가예산의 지출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국가예산의 집행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제안하는 법률이 실제 법률로 채택되는 데 유용할 것이다.

(2)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로비할 때

1. 국회의원과 만날 시간을 정한 후 로비를 하는데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후원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2. 로비를 준비한다. 로비활동을 위한 양식을 복사해서 그곳의 빈칸을 채워나간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조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3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준비하고 국회의원에게 줄 별도의 자료를 준비한다.
4. 평상시에 입던 옷보다 공식적인 옷(정장)을 입고 행동을 한다.

5. 정각에 도착한 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국회의원들이 정각에 도착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다른 법안들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거나 긴 논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6. 여러분의 로비대상인 국회의원에게 “저를 지지해주시겠습니까?”를 질문한다. 그의 대답이 “아니오” 혹은 “글쎄요”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로비할 것을 계획한다.
 7. 여러분이 그의 지역구 사람이라면 그사실을 이야기한다.
 8. 나중에 그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
- ☞ (「면대면 로비양식」 참조)

(3) 전화로 로비활동하기

1. 로비할 국회의원들의 집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정리해 둔다.
 2. 전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여러분의 후원자에게 자문을 구한 후 그 시간에 전화를 한다. 되도록이면 낮에 전화하는 것이 좋다.
 3.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투표해 주었으면 좋은 지를 말한다. 이는 여러분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4.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한 후 국회의원에게 “저를 지지해주시겠습니까?”를 질문한다. 만약 그의 반응 “아니오” 혹은 “글쎄요”라면 다른 방식으로 로비할 것을 계획한다.
 5. 여러분이 전화했을 때 국회의원이 자리에 없다면 전화번호와 메시지를 남긴다.
- ☞ (「전화로비양식」 참조)

4. 갈등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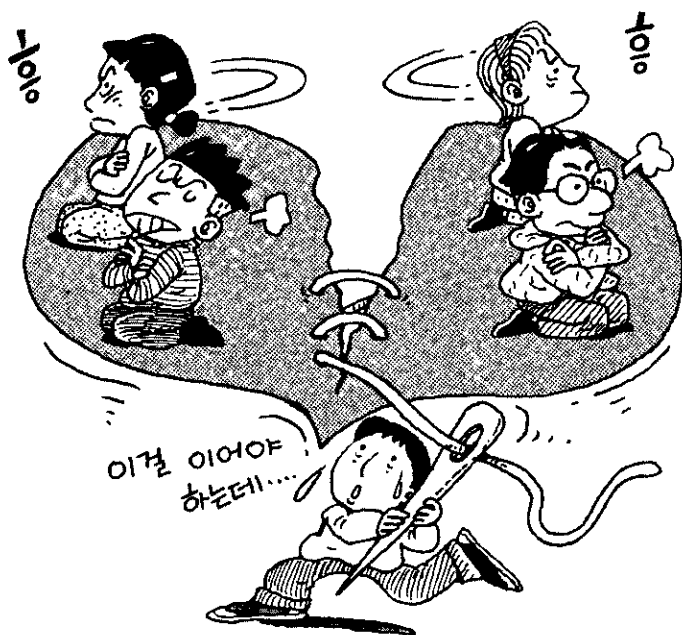
어느 조직이나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자신도 청소년자치활동을 하면서 동료끼리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인간관계가 원활해 질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가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1) 갈등을 다루는 전략

(1)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이 전략은 목적과 관계 둘 다 중요할 때 적당하다. 문제해결협상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조화되는 방법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개인의 숨겨 놓은 이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상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다음에는 사람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기 쉬운 갈등부터 우선 택하고 나서 협상할 시간을 결정한다.



(2) 유화

이 전략은 자신의 목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때 사용된다. 이 방법은 자기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쉽게 이루어진다.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어”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해 유감스러워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단, 이 방법은 갈등의 당사자들의 관계가 좋을 때 가능하다.

(3) 강요나 승패의 협상

이 전략은 인간관계보다 목적이 중요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다.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에는 ‘설득하기 위한 논쟁’, ‘최종 기한 제시’, ‘부동의 입장 고수’,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요구하기’ 등이 있다.

(4) 타협

이 전략은 자신의 목적과 타인과의 관계 둘 다 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 모두를 얻을 수 없을 때 혹은 제한된 시간이 다가올 때 사용된다. 따라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목적의 일부를 포기하고 관계의 일부를 희생시키게 된다.

(5) 후퇴

이 전략은 여러분의 목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둘 다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문제나 그 사람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잠깐만 !!!

때로는 기질 기술도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싫어”라고 말하거나 “난 그 문제를 협상하지 못하겠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 갈등해결에 있어 유의할 점

(1) 갈등으로부터 물러서거나 갈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며 동시에 개인적 손실을 가져온다. 자신의 감정을 공포, 분노, 적대감에 묶어 두게 되면 이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옛 갈등을 부활시키는 감정 폭발을 초래한다.

(2) 승패협상에 참여하지 말고 갈등을 서로의 문제로 파악한다.

갈등협상을 경쟁이나 승패로 파악할 경우 갈등은 점점 커진다. 승패식 접근은 고통을 증가시키고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갈등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무도 지는 것이 아니다. 결코 쉽게 이기지 말고 다른 사람과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 협상하는 것이 좋다.

(3) 시간이 부족할 때는 타협을 한다.

타협은 반쪽의 빵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속한 합의를 위해 목적의 일부와 관계의 일부를 희생시킬 수 있지만 협상에 참여할 충분한 시간이 없거나 목적과 관계 둘 모두가 중요할 때는 타협하는 것이 낫다.

(4) 유머 감각을 활용한다.

웃음이 최선의 치료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고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어떤 갈등은 논쟁자들이 한바탕 웃고 난 후에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5) 비겁한 태도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그것이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갈등에 대해 대화를 시작한 후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만을 표현하고 나서 상대방이 대답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만두는 것이 바로 “치고 빠지는 현상”인데 이것은 분노와 노여움만을 만들어 낼뿐이다.

(6)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상대방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의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개인에 대한 비방, 비난, 욕설, 조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쉬운 갈등부터 우선 해결한다.

문제가 작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면 협상하기가 더 쉽다. 협상을 시작하려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작은 문제를 찾을 수 없다면 큰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8) 상대방을 신뢰한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간에 신뢰가 크면 협상에 더 적극적이고 해결점을 찾기가 쉽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과 다시는 만나거나 부탁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 다시 볼지 모른다.

3)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전략

(1) 각자가 원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협상은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실수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고 공격적으로 되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들의 분노나 노여움을 숨긴 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합의와 상관없이 갈등은 또 일어나기 쉽다.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과 느끼고 있는 바를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정확히 행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요구를 알게 만드는 것과 그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서로가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교환한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각자 원하고 느끼는 것을 설명하고 서로에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갈등을 작고 구체적인 서로의 문제로 파악한다. 이때 여러분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들을 상대방과 교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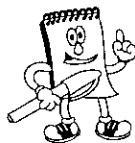
합의할 때 피해야 할 태도

1. 선불리 판단하지 말라
2. 하나의 대답만을 추구하지 말라
3. 나의 이익이 적고 상대방의 이익이 더 많다고 가정하지 말라
4. 자신의 즉각적인 요구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5. 새로운 것과 미지의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말라

합의할 때 바람직한 태도

1. 되도록 많은 선택사항을 생각하라
2. 우선 선택사항을 생각해 내고 판단은 나중에 하라
3. 문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4.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아라
5.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라
6. 합의된 사항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현실상황에서 검토하라





(3) 각자의 관점을 이해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사물을 본다고 오해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도 축구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갈등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불완전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4) 서로의 이득을 위한 선택사항들을 고안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처음에 제안된 해결책에 집착하여 이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합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방해한다. 한 가지를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세 가지의 대안들을 생각해 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좋다.

(5) 현명한 합의에 도달한다

합의는 관련된 모두에게 공평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때,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합의도 사람들간의 관계나 개인의 행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되며 장기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합의는 그것을 수행하는 모두의 책임과 권리를 전제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Barbara A. Lewis(1991, 1998). *The Kid's Guide to Social Action*. MN: Free spirit publishing Inc.
 데이비드 존슨 · 로저 존슨 지음, 추병완 · 김영은 역(2000). *갈등 해결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서울: 백의.
 리차드 장 · 캐빈 케호 지음, 이상욱 외역(1997).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방법*. 서울: 21세기 북스.
 박인규 외(1999). *회의진행 이렇게 하자 - 민주적인 학급회 · 학생회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천전웅 · 김경준 · 김영지(1995). *지역사회 공개토론 활동*.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회의 의사일정 양식



회의목적 :

1. _____
2. _____
3. _____

누 짜 :

시 간 :

장 소 :

준비자료 :

준비사항 :

집단성원

1. _____ (회장)
2. _____ (총무)
3. _____ (서기)
4. _____
5. _____

회의소집자 :

전화:

의사일정 항목	절 차	시 간	책임자

회 장 :

회의 날짜 :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 도	전적으로 그렇다	
1. 참석자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1	2	3	4	5
2. 참석자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다	1	2	3	4	5
3. 참석자는 집단의 결정에 만족하였다	1	2	3	4	5
4. 회장은 회의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였다	1	2	3	4	5
5. 참석자는 회의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였다	1	2	3	4	5
6. 참석자는 행동조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1	2	3	4	5

○ 의견과 제안 사항



참석자 이름 : _____

날 짜 : _____

● 문제점 파악하기

1. 문제점 :

2. 이 문제점은 청소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책임이 있는 정부의 부처는 어디인가?

4.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 현재 있다면 그 정책은 무엇인가?

● 정책이 있다면, 다음의 문제들에 답해보자

1. 이 정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2. 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지역사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정보수집방법

1. 이 문제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단체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본 사항

연구조사 팀 구성원의 이름 : _____

날 짜 : _____

도서관, 사무실, 기관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 : _____

○ 연구조사하는 문제점

1. 정보의 출처

1) 출판물 이름 : _____

2) 저 자 : _____

3) 출판연월일 : _____

2.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출판물에서 찾아서 기록하기

1) 이 문제점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2) 이 문제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3) 다음 중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점을 다루는 어떤 법이나 정책도 없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이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법이 적절하지 않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이 문제점을 다루는 정책이 적절하지만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3. 이 문제를 다루는데 책임 있는 정부의 부처는 어디인가?

그들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4. 지역사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5.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개인, 단체, 기관들은 어디인가?

1) 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그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그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3) 어떤 방법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가?

6. 이들의 입장에 대해 친구들과 내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본 사항

이 름 : _____

날 짜 : _____

문제점 : _____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 : _____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ex:사업가, 공무원, 교사 등) : _____

(주의 : 인터뷰한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만 적는다.)

우선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조사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 문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한다.

○ 문제점 파악하기

1. 당신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우리 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리라 믿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정책이 있다면, 다음에 대해 질문한다

1. 이 정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2. 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 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지역사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정보수집방법

1. 이 문제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단체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기본 사항

연구조사 팀 구성원의 이름 : _____ 날 짜 : _____

도서관, 사무실, 기관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 : _____

연구문제 : _____

○ 연구조사하는 문제점

1. 정보의 출처

- 1) 이 름 : _____ 2) 직급과 기관 : _____
3) 주 소 : _____ 4) 전화번호 : _____

2. 문제점에 대한 정보요청

- 1) 이 문제점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 2) 이 문제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 3) 이 문제점이 왜 정부에 의해서 다루어져야만 하는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 4) 다음 중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점을 다루는 어떤 법이나 정책도 없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이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법이 적절하지 않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이 문제점을 다루는 정책이 적절하지만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3. 이 문제를 다루는데 책임 있는 정부의 부처는 어디인가?

그들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4. 지역사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5.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개인, 단체, 기관들은 어디인가?

1) 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2) 그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3)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가?

6.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다룰 정책을 만든다면 정부가 우리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명서 양식



제 목 : _____

받는사람 : _____

제 출 자 : _____

우리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서명자 명단)

이 름	주소/소속 학교 및 단체	전화번호	서 명
1. _____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_____
3. _____	_____	_____	_____
4. _____	_____	_____	_____
5. _____	_____	_____	_____
6. _____	_____	_____	_____
7. _____	_____	_____	_____
8. _____	_____	_____	_____
9. _____	_____	_____	_____
10. _____	_____	_____	_____
11. _____	_____	_____	_____
12. _____	_____	_____	_____
13. _____	_____	_____	_____
14. _____	_____	_____	_____
15. _____	_____	_____	_____



수 신 : _____

이 름 : _____

주 소 : _____

우편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날 짜 : _____

이메일 주소 : _____

○ 무엇을 :

○ 누가 :

○ 언제 :

○ 어디서 :

○ 세부내용 :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입니다. 그리고 저는 ○○ 학교(또는 단체)에서 왔습니다.

1. ○○ 법률에 대해 찬성(혹은 반대)해 주시겠습니까?

2. 이것은 ○○○○○○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법률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우리의 해결책은 ○○○○○○○○입니다.

(그 법률에 대한 찬성 또는 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4. 제게 말씀해 주실 어떤 질문이나 제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임법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제안을 적는다)

5. 당신의 지지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아마

6.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사무실에 없다면 여러분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혹은 학교(집) 주소, 제안하고 싶은 법률 번호 그리고 의원이 어떻게 투표하기를 원하는지 등의 메시지를 남겨라)

<기타>

국회의원의 이름 : _____

날 짜 : _____

여러분의 이름 : _____

소 속 : _____

전화번호와 주소 : _____

여러분의 거주지역 국회의원 이름 : _____

안녕하세요. ○○○ 국회의원님이나 보좌관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입니다. 그리고 저는 ○○ 학교(또는 단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 ○○ 법률에 대해 찬성(혹은 반대)해 주시겠습니까?

2. 이것은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법률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우리의 해결책은 ○○○○○○○○○○입니다.

(그 법률에 대한 찬성 또는 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4. 제게 말씀해 주실 어떤 질문이나 제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입법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제안을 적는다)

5. 당신의 지지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아마

6.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사무실에 없다면 여러분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혹은 학교(집) 주소, 제안하고 싶은 법률 내용 그리고 의원이 어떻게 투표하기를 원하는지 등의 메시지를 남겨라)

<기 타>

국회위원의 이름 : _____ 전화번호 : _____

소속 위원회 : _____ 주 소 : _____

여러분의 이름 : _____ 날 짜 : _____

소 속 : _____

전화번호와 주소 : _____

여러분의 거주지역 국회의원 이름 : _____

부모들은 오직 좋은 충고를 주거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 성격의 최종 형성은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Anne Frank

젊은이기 된다는 것의 덕목 중의 하나는 당신이 현실을 당신의 상상에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Sam Levenson

보기에 아무리 이찮은 일이라도, 당신이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Gandhi

행운은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Oprah Winfrey

크게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크게 성취할 수 있다. Robert Kennedy

나쁜 정치인은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George Jean Nathan

변화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Heraclitus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 Edward Noyes Westcott

주먹을 꼭 쥐고서는 악수를 할 수 없다. Indira Gandhi

당신은 모든 경험을 통해 힘, 용기 그리고 신념을 얻는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애야만 한다. Eleanor Roosevelt

항거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일 때, 묵묵히 서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적의이다. Abraham Lincol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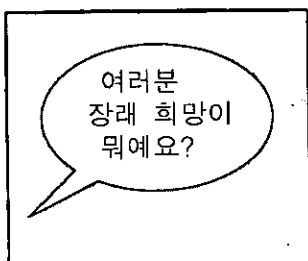
모든 위대한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다. Thomas Carlyle

낙심과 절망은 곧 정신의 자살이다. 안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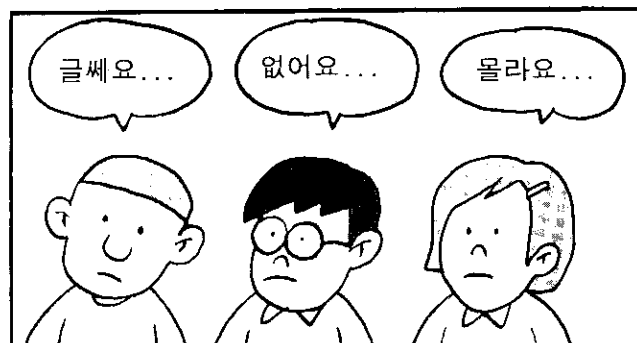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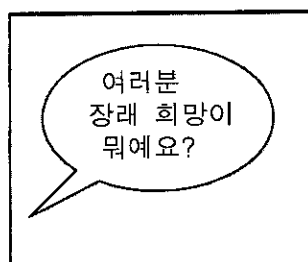
유능한 항해사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한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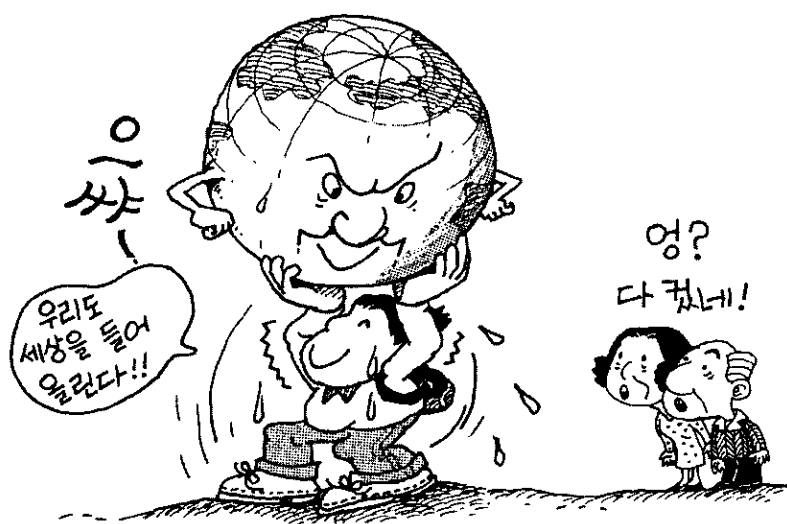
고등학교 때...



우리들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꿈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년육성 분야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나요?

▶ 청소년육성에 대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 청소년기본법 : 1991년 12월 31일 제정 · 공포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육성의 근거가 되는 종합법
- 청소년보호법 : 1999년 3월 7일 제정 ·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보호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
- 청소년백서 : 청소년정책 담당 부처(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매년 발간. 청소년 인구 현황, 건강과 안전, 교육, 근로, 청소년활동, 복지, 비행, 교류, 청소년 육성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 청소년지표 :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3년 주기로 발간

▶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 : 청소년육성위원회

- 성격 :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방향 제시 및 종합조정 등을 위한 기구
- 구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당연직위원은 15명의 관계부처 장이며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위원 11명을 위촉한다.
- 기능 :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중 · 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 · 조정 또는 심의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으로 하고 있다.

☞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단위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구성과 운영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역의 중요한 청소년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 · 도청 및 시 · 군 · 구청의 청소년담당부서에 문의해서 알아보십시오. '청소년위원회' 회의날짜를 알아보고 청소년대표자들이 참관을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인들로 이루어진 '지방청소년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자치)위원회'가 구성 ·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대표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청소년 전담 행정기구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www.mct.go.kr)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총괄,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청소년 실태의 조사·연구,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청소년 관련 통계 자료의 수집 및 청소년 백서 등의 발간,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청소년 관련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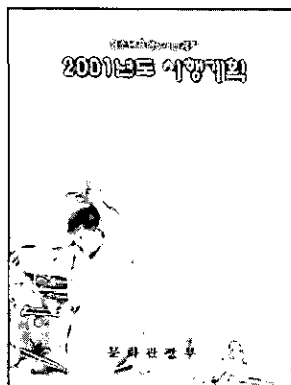
☎ 3704-9910~3 Fax. 3704-9919

- 청소년지원과 :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청소년 시청각자료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인가 및 육성·지원,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협력,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서의 파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교포 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 농어촌 청소년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

☎ 3704-9920~3 Fax. 3704-9929

- 청소년수련과 : 청소년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시설의 모형 및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에 대한 자원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 지도,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시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

☎ 3704-9930~3 Fax. 3704-9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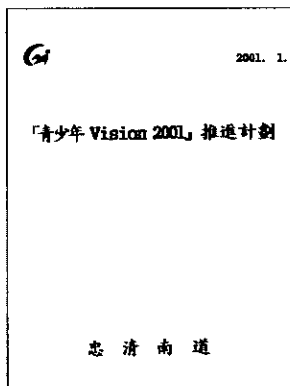


☞ 이 책을 보면 2001년도에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육성정책과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에 문의해서 구할 수 있으며 매년 작성·발간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시책을 추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 위 원 장 : ☎ 735-6255, 3703-2060 Fax 735-6265
- 사무국장 : ☎ 735-2645, 3703-2062
- 기획과 : 주요사업 심사분석, 행정제도 개선계획 수립·집행, 행정통계 유지·관리,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의 업무 담당
☎ 735-6253 Fax 735-2644
- 조사운영과 : 청소년 보호시책 장단기계획 수립·종합·조정, 청소년보호관련 단체·시민·지역단 위 운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사업 담당
☎ 735-2648 Fax 735-2644
- 보호기준과 :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 진흥지원 계획 수립, 청 소년보호심의제도 조사·연구 및 개선, 청소년유해매체·약물·업소의 심의·결정·고사 등의 업무 담당
☎ 735-2646 Fax 735-2644
- 선도보호과 : 청소년보호관련 유공자 발굴·포상, 청소년보호 국제교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 지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 735-2667 Fax 735-2650
- 중앙점검단 : 중앙차원의 종합단속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계획 수립·시행,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보호·단속활동 점검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
☎ 735-6254 Fax 735-2649

● 시·도 청소년육성 담당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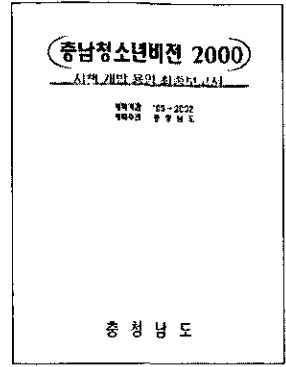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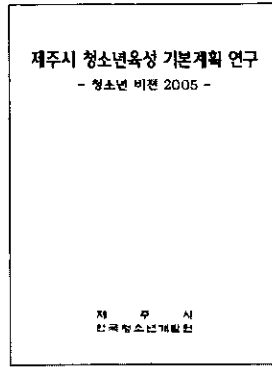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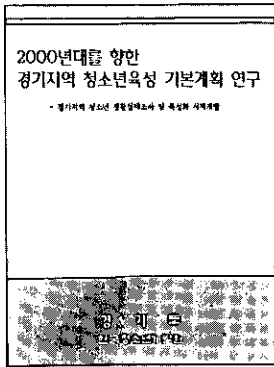


시·도 및 시·군·구청청소년육성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올해 청소년정책과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도 및 시·군·구청의 청소년담당부서에서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서'를 구해서 알아보시다

구분	담당부서	전화 및 팩스(f)	주소
서울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www.metro.seoul.kr	02)3707-9253 02)3707-9269(f)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100-744)
부산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www.metro.pusan.kr	051)888-2972 051)888-2959(f)	부산시 연제 연산5-1000 (611-085)
대구	문화체육국 청소년과 www.daegu.go.kr	053)429-2531 053)429-2539(f)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번지 (700-714)
인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www.metro.incheon.kr	032)440-3294 032)440-3269(f)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405-750)
광주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www.metro.gwangju.kr	062)606-3325 062)606-3449(f)	광주 동구 계림동 505-900 (501-701)
대전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 www.metro.daejeon.kr	042)600-3487 042)600-2429(f)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302-789)
울산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 www.metro.ulsan.kr	052)229-3723 052)229-3729(f)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 1동 646-4 (680-701)
경기	문화체육국 청소년과 www.provin.kyonggi.kr	031)249-4714 031)249-2549(f)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441-849)
강원	관광문화국 체육청소년과 www.provin.gangwon.kr	033)249-2531 033)249-4053(f)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200-020)
충북	문화진흥국 체육청소년과 www.provin.chungbuk.kr	043)220-4232 043)220-4219(f)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360-765)
충남	자치문화국 체육청소년과 www.provin.chungnam.kr	042)251-2532 042)251-2539(f)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301-763)
전북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provin.chonbuk.kr	063)280-2533 063)280-2539(f)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 (560-761)
전남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www.provin.chonnam.kr	062)607-3323 062)607-6156(f)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501-702)
경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www.provin.kyongbuk.kr	053)950-3323 053)950-3329(f)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702-702)
경남	사회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www.provin.kyongnam.kr	055)279-3324 055)279-3329(f)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번지 (641-702)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www.provin.cheju.kr	064)710-2841 064)710-2819(f)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690-700)

(2001. 7. 27 현재)

☞ 자치단체에서 매년 발간하는 '시행계획서' 외에 중·장기 청소년육성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시가 그 예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분야의 별도 중·장기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지역 자치단체장의 인식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청소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 청소년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 정책의 수혜자이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청소년 여러분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부처별 청소년 육성업무 분담현황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이지만 ‘청소년’이라는 대상 자체가 연령으로 구분되는 집단이므로 청소년정책은 문화, 교육, 노동, 가정, 복지 등 청소년의 삶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부처별 기능에 따라 각기 수행하고 있어 부처간의 협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육성위원회’이기도 하다.

부 처 명	홈페이지	육성업무 지원 사업내용
재 정 경 제 부	www.mofe.go.kr	청소년사업에 인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통 일 부	www.unikorea.go.kr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통일교육 시범학교 지원
외 교 통 상 부	www.mofat.go.kr	한·일대학생 교류/한·일청소년 네트워크 포럼
법 무 부	www.moj.go.kr	비행청소년 선도·교화/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 교정·교화기능 강화 등
국 방 부	www.mnd.go.kr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행 정 자 치 부	www.mogaha.go.kr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등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체형, 교류·교환 학습/도·농교류 체험학습
과 학 기 술 부	www.most.go.kr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등
산 업 자 원 부	www.mocie.go.kr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지정 지원
정 보 통 신 부	www.mic.go.kr	PC통신, 인터넷상의 공개정보 모니터링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사이버공간 건전정보유통과 청소년보호 교육·홍보
보 건 복 지 부	www.mohw.go.kr	소년소녀가장/시설보호아동/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환 경 부	www.me.go.kr	청소년 환경교육 등
노 동 부	www.molab.go.kr	근로청소년문화생활/근로청소년회관운영/미진학청소년 직업훈련
여 성 부	www.moge.go.kr	여학생과학프로그램/진로지도/정보화사업
대 검 찰 청	www.sppo.go.kr	학교폭력범죄 예방 단속/청소년선도 활동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경 찰 청	www.police.go.kr	소년수사/청소년선도단체/범죄예방교실 운영
농 촌 진 흥 청	www.rda.go.kr	농촌청소년조직(4-H) 육성 및 수련활동
산 림 청	www.foa.go.kr	녹색수업/푸른숲선도원 선발 육성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
-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

구분	세부 시설명	개 념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일상생활지역에서 실내활동위주의 다양한 수련 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일상생활지역에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원	자연권역에서 생활권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 야영장	야영시설을 갖추고 수련활동을 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편의제공과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생활권 수련시설 219개, 자연권 수련시설 300개, 유스호스텔 62개 등 총 581개 운영 중(2001년 1월 현재)

○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98. 11. 14 개원)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154-1
- 주요시설 : 연수동, 실내수영장, 체육관, 강당(소극장), 생활관, 운동장, 눈썰매장, 궁도장, 테니스장, 모험놀이시설, 야영장, 영농체험장, 인공암벽, 협동훈련시설 등
- 주요기능 : 일반청소년 수련활동(초·중·고생, 대학생 등),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특수수련활동, 가족단위수련 및 여가활동의 장 제공, 청소년지도자 연수(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위원 등), 수련프로그램 개발(문화적 감성, 개척정신, 환경의식 함양 등), 국제청소년 교류지원
- 주요 운영프로그램 : 일반수련, 특수수련, 가족캠프, 국제교류 등
- 연락처 : ☎ 033)333-8830 Fax 033)333-8664 / 서울사무소 02)3462-1318
- 홈페이지 : www.purumi.org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1. 8. 15 개원)

- 위 치 : 충남 천안시 목천면 교촌리 246-1
- 주요시설 : 본관, 대극장, 국제회의장, 체육관, 생활관, 전통문화수련관, 야외공연장, 수영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 주요기능 :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청소년수련활동 전국 지도자 연수, 세계, 특히 동남아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국제회의 및 개최, 남북 청소년교류 및 독립기념관 연계 민족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내 외 청소년 수련시설 단체간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환 등

- 연락처 : ☎ 041)620-7700 Fax 041)620-7769

- 홈페이지 : www.nyc.or.kr

▶ 국제청소년센터(2000. 7 개원)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01(방화전철역 200미터, 도보 5분 이내)

- 주요시설 : 국제세미나실, 숙박시설,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에어로빅장 등), 동아리방, 강당, 문화시설, 회의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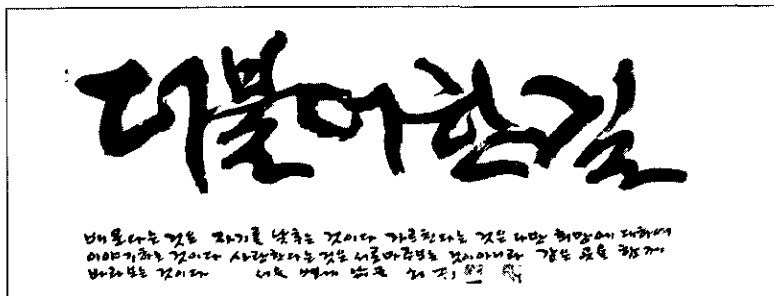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한국문화자료 소개, 유스호스텔 기능과 청소년단체의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단체활성화, 청소년문화·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제공

- 연락처 : ☎ 02) 2667-0471, 0874 Fax 02) 2667 - 0479

- 홈페이지 : www.koreayouth.net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

○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전국 580여개 수련시설 중 2000년도 시범청소년수련시설 13개(생활권 7개, 자연권 5개, 유스호스텔 1개)와 2001년도 시범청소년수련시설 9개를 소개한다. 각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관광광부에서 발간하는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책자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Y-tin 정보서비스(www.youthnet.re.kr)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최근의 시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00년도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 ▶ 안양시청소년수련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번지
전화번호 : 031-380-6870
팩스번호 : 031-380-6875
홈페이지 : www.ayc.or.kr
- ▶ 청소년수련관 젊음의집
주 소 : 경남 창원시 소담동 127-2
전화번호 : 055-255-8295, 296-7241
팩스번호 : 055-293-7511
홈페이지 : www.youngdonbosco.net
- ▶ 살레시오청소년수련관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95-1
전화번호 : 02-691-6543~5
팩스번호 : 02-693-8603
홈페이지 : www.donboscorea.org
- ▶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보라매공원내)
전화번호 : 02-834-6411~4, 834-7231~4, 834-1355~6
팩스번호 : 02-834-7235
홈페이지 : www.boramyc.or.kr/
-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주 소 : 청주시 흥덕동 승정동 140-61
전화번호 : 043-261-0700~3
팩스번호 : 043-271-1070
홈페이지 : <http://jouth.jsc.ac.kr/jouth>

청소년 문화의 집

-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 155번지
전화번호 : 063-273-5501
팩스번호 : 063-273-5502
홈페이지 : <http://youthhouse.woorizip.com>
- ▶ 노원청소년문화의집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72번지
전화번호 : 02-3391-4141
팩스번호 : 02-3391-4142
홈페이지 : www.youthcenter.or.kr

청소년수련원

- ▶ 완도청소년수련원
주 소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655-3
전화번호 : 061-553-4070, 061-554-4067
팩스번호 : 061-554-1493
홈페이지 : www.yescall.com/wandoytc
- ▶ 청정인성수련원
주 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257
전화번호 : 063-222-7754
팩스번호 : 063-221-3014
홈페이지 : www.cjis.co.kr
- ▶ 화양청소년수련원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153-1
전화번호 : 043-832-8801~4
팩스번호 : 043-832-1628
홈페이지 : www.hysw.co.kr
- ▶ 박달재수련원
주 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81-3
전화번호 : 043-652-9222, 02-457-2248
팩스번호 : 043-652-4222, 02-444-7267
홈페이지 : www.parkdaljae.co.kr
- ▶ 속리산유스타운
주 소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관리 3-8
전화번호 : 043-540-7777
팩스번호 : 043-542-5215
홈페이지 : www.sokisan.co.kr

유스호스텔

- ▶ 둔내유스호스텔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1140
전화번호 : 033-343-6488
팩스번호 : 033-343-6487
홈페이지 : www.doonnaeresort.co.kr/youth/

청소년수련관

▶ 서울특별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전화번호 : 02-2267-2914

팩스번호 : 02-2266-3211

홈페이지 : www.youthc.co.kr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전화번호 : 051-868-0750

팩스번호 : 051-868-1258

홈페이지 : www.power1318.org

청소년 문화의 집

▶ 안산청소년문화의 집

주 소 : 안산시 선부동 1070-10 교통종합민원실 3층

전화번호 : 031-485-1318

팩스번호 : 031-485-1319

홈페이지 : www.ansanywca.or.kr

▶ 전주시립완산청소년문화의 집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61-7

전화번호 : 063-226-5193

팩스번호 : 063-226-4008

홈페이지 : www.youngi.or.kr

▶ 익산청소년문화의 집

주 소 :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303-1번지

전화번호 : 063-857-6111

팩스번호 : 063-858-3564

홈페이지 : www.iksan1318.ce.ro

청소년수련원

▶ 엠마청소년수련원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63-1

전화번호 : 031-675-2171

팩스번호 : 031-675-9681

홈페이지 : www.oemma.co.kr

▶ 용두암청소년수련원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110-2

전화번호 : 031-582-9788

팩스번호 : 031-582-6782

홈페이지 : www.yongdooam.co.kr

유스호스텔

▶ 모악산유스호스텔

주 소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65

전화번호 : 063-548-4401

팩스번호 : 063-548-4403

홈페이지 : www.moakyh.co.kr

▶ 삼정부여유스호스텔

주 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05-1

전화번호 : 041-835-3101-5

팩스번호 : 041-835-3791

홈페이지 : www.buyeoyh.com



▶ 청소년 상담실

○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l.or.kr)

- 중추적인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기법 연구 및 자료제작·보급,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청소년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상담기관간의 교류, 정보자료 수집 및 공급, 청소년 상담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운영 등 전국 상담기관의 중추적 기능 수행,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청소년 도덕성 증진운동 실시
- 상담전화 : 02)2231-2000, 02)730-2000

○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지역	주 소	전화번호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서울 중구 수표동 27-1 (100-230)	02)2285-1318
부산시청소년종합상담실	부산 진구 전포 2동 666-6 세화빌딩 3층 (614-044)	051)804-5001
대구시청소년종합상담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702 앞산공원 청소년수련원 내 (704-340)	053)635-2000
인천시청소년종합상담실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582-2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내(406-112)	032)891-2000/1
광주시청소년종합상담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9번지 YMCA 3층 (501-030)	062)232-2000
대전시청소년종합상담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층 (301-730)	042)257-2000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수원시 권선구 교동 140-4 성진빌딩 3층 (441-130)	031)225-1318
강원도청소년종합상담실	춘천시 사농동 277-1 도수련원 2층 (200-140)	033)256-2000
충북청소년종합상담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19-5 (360-130)	043)258-2000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천안시 원성동 543-4번지 천안 신희동부지점 3층 (330-070)	041)554-2000
전북청소년종합상담실	전주시 덕진구 금암 2동 1600-6 YMCA회관 4층 (561-182)	063)275-2000
전남청소년종합상담실	순천시 장천동 80-15 (540-190)	061)724-2000
경북청소년종합상담실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760-140)	054)859-2000
경남청소년종합상담실	경남 창원시 삼동 산 27-1 (641-230)	055)273-2000
울산시청소년종합상담실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160-8 고려빌딩 3층(680-190)	052)227-2000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제주시 일도 2동 141-4 기봉빌딩 내 (690-012)	064)758-2000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추고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청소년 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한다. 정부는 2001년 말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833명, 2급 청소년지도사 4,113명, 3급 청소년지도사 2,198명 등 총 7,144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정의 연수를 실시하며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활용한다.
- 청소년지도사가 되는 길 : 대학 청소년관련 학과 졸업 또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을 갖춘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 청소년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 명지대, 중앙대, 경기대, 경산대, 순천향대, 가톨릭대, 한체대, 호서대, 천안대, 한서대, 주성대, 서울여대, 영산원불교대, 성산효도대, 평택대, 원광보건전문대 등
- 청소년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청소년지도사 협회 : www.youthleader.or.kr

전국 청소년지도사 연합회(전지연) : www.youthhelper.co.kr

전국청소년학과학생회연합(전청련) : cafe.daum.net/cjdthsus

청소년학과 연합동아리(청연) : www.freechal.com/youthleader

청소년지도사 정보원 : www.youthworkerinfor.net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홈페이지 : www.koreayouth.net
-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2001년 7월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62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47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21만여 명의 지도자, 65만여 명의 기타 회원 등 총 333만여 명이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01(157-856)
☎ 02) 2667 - 0471, 0874 Fax. 02) 2667 - 0479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홈페이지 : www.youthvol.net
- 기능 : 16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중앙센터로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업무 담당.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정보수집 및 제공,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담당

○ 전국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센 터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중앙센터)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02)578-4104	02)2188-8889
서울청소년자원봉사센터	(156-010)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6	02)849-0404~5	02)849-0406
부산청소년자원봉사센터	(614-854)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260-5 양정청소년회관 1층	051)852-3461~2	051)852-3463
대구청소년자원봉사센터	(704-34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702 청소년수련원 2층	053)623-4083~4	053)627-3307
인천청소년자원봉사센터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82-1 가천인력개발원	032)833-8057~8	032)833-8056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501-1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5-4 홍사단회관	062)234-0755~6	062)223-4885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302-834)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 평송청소년수련원 2층	042)488-0732~3	042)488-0734
울산청소년자원봉사센터	(680-845)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336-2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층	052)227-0606~7	052)227-0608
경기청소년자원봉사센터	(440-870) 경기도 수원시 화서 2동 436-3 한국보이스카우트 경기연맹 사무국내	031)297-0880~2	031)297-0883
강원청소년자원봉사센터	(220-010)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18-3 원주시민센터 4층	033)731-3704	033)731-5704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360-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5977~8	043)220-5979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	(320-030) 충남 논산시 내동 840	041)736-9003~4	041)733-1984
전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560-8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8 전북은행 3층 302호	063)282-4104	063)284-9422
전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	(530-230) 전남 목포시 무안동 5-52 목포YMCA회관 1층	061)243-1450~1	061)243-1452
경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760-140)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구영륜동사무소	054)857-4445~6	054)857-4447
경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	(641-210)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창원종합운동장내151-1호	055)264-2311/2321	055)264-2355
제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690-832) 제주도 제주시 일도 2동 141-4 기봉빌딩3층	064)726-4101~2	064)726-4020

▶ 한국청소년개발원

- 홈페이지 : www.youthnet.re.kr
- 정부출연 청소년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정책 관련 기초이론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정책평가지원 업무 및 청소년단체·시설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기능 수행, 청소년종합정보망 Y-tin 운영 및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 자격연수 실시
-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137-715)
☎ 02) 2188-8860/70 Fax 02) 2188-8869

☞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책을 참조하세요.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정보가이드 - 청소년관련 문답풀이 FAQ.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 '청소년백서'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열린자료방' 내의 '공개자료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www.mct.go.kr).

